IV.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1. 임오군란
-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1. 임오군란

1) 임오군란의 배경

(1) 서울의 사회경제 구조와 하층민

조선 후기에서 한말에 이르는 시기의 서울은 정치·군사·행정기능이 중심인 도시에서 상공업 중심의 도시로 바뀌고 있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관련해서 상업·수공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부문이 발전하자, 지리적으로 수륙교통의 요충지인 서울은 남북의 물산이 잇따라 모여들고 다시 각 지방으로 보내지는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19세기의 서울은 호구 45,000에 인구 20만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인구의 유입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많은 부동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말이 되면 서울의 실제 인구는 20만을 훨씬 넘어 30만에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내의 京中五部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구가 주변지역인 성저 각 면에 흩어져 거주지를 형성했다. 특히 한강 연안의 용산・마포・서강・동작・서빙고・두모포・뚝섬 등이 점차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무대가 되면서, 이농민들이 상인・수공업자・임노동자와 같은 도시하층민으로 정착하는 신흥촌락이 형성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용산・마포・서강을 포함한 서부 교외지역의 주민은 호구 9,750, 인구 34,125명으로 다른지역보다도 유난히 밀집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강 연안지역이 활발한 경제적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고용기회 또는 호구지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1)

19세기 서울의 경제구조는 농촌사회의 변동—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해과정의 진행에 따른 계층구조의 재편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변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구조가 상당한 정도로 해체되고 있었고,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상업, 수공업, 기타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로 이행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개항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여전히 이행기의 과도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개항 이후 이러한 조선사회 내부의 변동과정, 특히 서울의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일본세력의 침투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어 갔다. 당시 우리 나라의 개항은 세계 자본주의시장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마지막 개항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이었고 오히려 뒤늦게 실현된 셈이었다. 이미 자본 주의 열강에 종속되어 있던 절대주의체제의 일본에 의해서 불평등조약에 의 한 개항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비록 구미 자본주의 열강과의 직접적인 수교통상은 아니었지만, 우리 나라가 일본을 매개로 자본주의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개항 후 일본과의 무역구조는 일방적인 일본측의 특권과 無關稅貿易이었고, 일본 상업자본이 거류지를 중심으로 해로무역을 독점하여 영국의 자본제섬유제품을 비롯한 각종 洋貨를 중계 유입시키는 한편 우리 나라의 곡물과金·地金을 유출시키는 형태였다. 관세의 장벽 없이 유입된 서구상품은 일반 농민과 도시 하층민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종 서구상품과 맞서 싸우는 織布業者를 포함한 많은 수공업자들을 몰락시키고 있었다.2)

또한 우리 나라의 주식인 쌀이 대량 유출되었는데, 이는 곡가의 앙등을 가

¹⁾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 증가와 공간 구조의 변화〉(《한국 사회구조의 전통과 변화》: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43, 문학과지성사, 1994).

²⁾ 姜徳相、〈李氏朝鮮 開港直後における朝日貿易の展開〉(《歷史學研究》265, 1962). 김경태、〈개항과 불평등조약 관계의 구조〉(《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94).

梶村秀樹,〈李朝末期 綿業의 流通 및 生産構造〉(《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3).

져와 개항 이후 1882년 사이에 곡가가 약 3배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빚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곡가가 물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은 도시경제의 구조를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를 시장을 통해 구입하여 생활하는 도시민, 특히 하층민들에게는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무역은 이익에 민감한 일부 특권상인들이 미곡의 수집·중계와 양화의 유통과정에서 성장하게 만든 반면, 도시 하층민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3)

서울주민의 계급구성도 바뀌고 있었다. 농촌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전입인구가 도시 하층민으로 정착하면서 계속 축적되어 감에 따라 상인·수공업자계급이 크게 늘어났고, 이들이 분화함으로써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富商과 성장하는 수공업자들이 존재하는 한편, 소상인, 영세수공업자, 수공업노동자와 잡역노동자, 상품하역 및 선적작업과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에 고용되는 임노동자, 일자리 없이 떠도는 부랑자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사회계급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주민의 계급구조 변동은 주로 경제구조의 변동에 의해, 그리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던 신분제도의 해체현상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 고 있었다. 중세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사회신분제도의 해체현상은 신분구 조의 逆階層化로 나타나고 있었다. 양인 및 천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 또는 중인으로 상승하는 반면, 일부 양반인 대지주, 특권관료들에게 부가 집 중되면서 많은 양반들이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로 떨어져 하층민으로 편입되 고 있었다.4)

19세기 서울의 하층민5)은 농민층 분해과정에서 몰락한 농민들이 도시로

³⁾ 金敬泰,〈對日不平等條約改正問題發生의 一前提—開港前期의 米穀問題에서 본 外壓의 實態〉(《梨大史苑》10,1972).

吉野誠,〈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2, 1975).

⁴⁾ 四方博,〈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考察〉(《朝鮮社會經濟史研究》中, 東京; 國書刊行會. 1976.

金容燮, 〈朝鮮後期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증보관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지식산업사, 1995).

김인걸,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 현황〉(近代史研究會 編, 《韓國中世社會 解體期 의 諸問題》 하, 한울, 1987).

들어와 정착하는 자들과 도시 안의 상업·수공업 등 각종 부문에서의 경쟁과 분화과정에서 몰락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는데, 두 부문 가운데서도 특히이농민들의 도시유입에 의해서 계속적인 충원과 증가가 이루어졌다. 토지로부터 밀려난 유민이 서울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역동적인 생산부문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본주의 부문이 크게 확대된 상태가 아니었다. 수공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의 광범위한 고용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시장권을 대상으로 대량 상품생산을 수행하는 공장제 수공업단계로의 이행,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폭넓은 침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 서울은 아직 이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세의 신분제도와 계급관계는 해체되고 있었지만, 자본주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계급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형성되고 있었고, 중세사회 해체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범람하는 과잉 노동력 때문에과잉 실업현상이 계속됨으로써 낮은 임금수준이 유지되었고, 한 직업에 지속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보다는 계속 일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日雇的인 형태의 임시 불완전고용이 주된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 하층민의 불완전고용형태와 높은 수평이동율은 그들의 수입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묶어 놓았고 낮은 수준의 생활조건을 감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6)

서울 하층민의 주요 구성부분은 크게 보아 소상인·영세수공업자·임금노 동자·관청 말단직책 담당자·하급 군병·부랑자 등의 여러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각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영세소상인: 도시에 새로 정착하는 하층민들이 과잉 실업상태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계유지 방식의 하나는 소상인으로 활동하는 길이었다. '無

⁵⁾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도시 하층민이다. 하층민이라는 개념은 물론 엄밀한 사회학적 개념은 못된다. 그러나 그들이 도시사회의 계급구조 내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자들로서 저소득, 또는 불완전 취업상태 에 있는 소상인, 영세수공업자들과 실업자, 부랑자 등의 여러 집단을 포괄하 는 범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⁶⁾ 尹用出,〈17~8世紀 土木工事의 募軍-役夫動員形態의 變質問題를 中心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依窮民'・'窮村僻巷의 남녀행상' 등으로 표현되는 이들은 매우 영세한 자본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들의 상업행위는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행상, 한두 필의 말등에 물건을 싣고 팔러 다니는 馬販子, 도성 안팎 길거리의 곳곳에 변두리 마을마다 길목마다 假家를 짓고 상업행위를 하는 좌상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소상인들 중에서 중간도매 또는 시전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시전과 사상모두가 심하게 도고를 전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발전을 저지당한 채몰락하거나 영세한 상업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 ② 영세수공업자: 수공업자들은 대부분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관부의 賃傭私 工에 응하는 한편, 서울 시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작업장인 匠房에서 상품을 제조하여 貢人 또는 상인들에게 넘기거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며 소상품 생산활동을 하고 있던 자영수공업자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였으며, 그 중 몰락한 영세수공업자들이 상인자본의 지배하에 예속되면서 상인들에게 원료와 판로를 봉쇄당한 채 선대제에 의한 생산을 하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8)
- ③ 임노동자: 이들은 고용 주체에 따라 민간부문 고용노동자와 관부 고용노동자들로 나눌 수 있다. 한강 연안에서 상품하역, 선적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농업노동자들은 민간부문 고용노동자이며, 관부의 각종 행사와 토목공사에 고용되거나 한강 연안에서 세곡·공물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관부고용노동자들이었다.

국가에 의한 고립·고용노동자는 과거의 정발부역군과는 달랐지만, 고용주체가 중세국가이고 노동이 가치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중세적 성격의 고용관계를 벗어났으면서도 아직 자본주의 노동자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형태의 임노동자였다.》이에 비해 민간부문 고용노동자는 가치증식을 전제로 한 생산부문, 또는 유통부문의 고용이라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적 성격에 접근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분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수공업공장에 흡수되어 수공업노동자가 될 경우에는 자본—임금노동의 자본주의적인 고용관계에 속하는 근대적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었다.10》

④ 관청 말단직책 담당자: 皂隷・羅將・禁隷는 물론 使喚・日守 같은 관청

^{7) 《}備邊司謄錄》 170책, 정조 11년 정월 15일.

[《]各廛記事》地卷, 영조 47년(건륭 30) 10월·정조 5년(건륭 46) 4월. 柳壽垣,《迂書》, 四民總論.

林仁榮.《李朝魚物廛硏究》(숙명여대 출판부. 1977).

⁸⁾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서울大 出版部, 1973).

⁹⁾ 尹用出, 앞의 글.

¹⁰⁾ 金泳鎬、〈朝鮮後期 手工業의 發展과 새로운 經營形態〉(《大東文化研究》9, 1972).

의 각종 말단직책이 역제의 변동과정에서 부역으로부터 대부분 고립화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관청뿐만 아니라 각 궁궐내의 곳곳에서 일하는 자들이 모두 부역이 아닌 고립으로 충원되고 있었다.¹¹⁾ "궐내 각처 고립군이 모두 동서 곳곳에서 온 오합지배"라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¹²⁾ 이러한 하급 말단직책의 전문직업화 추세에 따라 많은 도시 하층민들이 이 부문에서 생업을 찾고 있었다.

말단직책은 대부분 고용조건이 나쁘고 苦役이었으므로 경제수준이 아주 낮은 자들이 주로 고립에 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민접촉이 잦은 일부 직책—보기를 들면 좌우포도청의 校卒,13) 五部의 史屬14)—의 경우는 비교적사정이 달랐다. 이들은 국가 수취구조의 하부 기능을 담당하면서 중간착취를 통하여 민중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잡세를 받아 내서 자신들의 낮은 급료를 보충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부분의 횡령 또는 착취가 가능한 직책의 경우는 일정한 권리금이 붙어 매매되기도 하였다. 균역청 庫直이 그러한 경우이다.15) 이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볼 때 그들의 수탈대상인 도시 하층민들과 대립관계에 서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⑤ 하급 군병: 각종 관청·궁궐의 말단직책에 고용되는 자들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고용부문으로서 대부분 도시 하층민들 가운데서 모집에 응모하여 군병이 된다. 하급 군병은 특히 이 글의 분석목표인 「임오군란」의 주체세력으로서 중요한 집단이므로 따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⑥ 부랑자: 농촌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뚜렷한 거처와 일자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流丐, 또는 간헐적으로 취업은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道下相賤之 浮浪無賴輩' 등으로 표현되는 자들이다. 이들 중에 일부는 말단관리 또는 양반사대부들에 私募되거나, 작당되며 그들과 결탁하여 대민수탈의 무력행사자로 동원되고 있었다.16)

이상과 같이 도시 하층민들은 각 직업이 지닌 성격과 노동조건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 구성을 보여주면서 이행기의 과도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¹¹⁾姜萬吉,〈朝鮮後期 雇立制發達-差備軍과 造墓軍의 雇立化를 중심으로〉(《韓國史研究》13, 1976).

^{------, 〈}朝鮮後期 雇立制發達-- 皂隷・羅將을 중심으로- 〉(《世林韓國學論叢》 1,1978).

^{12) 《}正祖實錄》 권 12, 정조 5년 10월 정유.

^{13) 《}備邊司謄錄》 247책. 철종 11년 5월 10일.

^{14) 《}備邊司謄錄》 222책, 순조 34년 11월 28일. 《日省錄》, 고종 1년 정월 18일.

^{15)《}左捕廳謄錄》권 6, 을사 4월 罪人金串致案.

^{16) 《}備邊司謄錄》 203책, 순조 13년 12월 10일 및 247책, 철종 11년 7월 10일.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생활방식은 대체로 동질적이었다. 이들은 도성내의 빈촌이나, 교외의 변두리 마을, 또는 강촌에서 신흥촌락을 형성하며 집단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남의 집에 貰居・借居하거나 진흙집 또는 움집에 기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농민들과 달리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수공업 생활필수품을 시장으로부터 구입해서 생활하는 소비자였으며, 그것도 그날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細窮民들이었다. 때문에 물가의 극심한 변동, 특권상인들의 독점행위는 이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울주민들 중에서 각종 세와 요역의 주담당자로서 국가가 필요하는 재정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조세수취를 담당하는 말단관리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잡세를 착취당하는 위에 토착양반들에게도 침학을 받고 있었다.17)

(2) 하급 군병의 성격과 군제개편

조선 후기 중앙군의 핵심은 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의 3군문이었으며, 그 밖에 總戎廳 · 龍虎營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군영들이 제도적인 변화를 계속하면서 유지되고 있었다. 훈련도감은 傭兵制에 기초한 군영이다. 어영청과 금위영은 給保制 위에 성립된 군영이었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향군 番上이 중지되고, 대신 도성에 상주하는 京軍을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었다. 여기에서 다루는 하급 군병은 서울에 상주하는 급료병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훈련도감 군병들과 용호영의 군병, 어영청과 금위영의 경군, 그리고 標下軍이 해당된다.18)

훈련도감 병력은 성립 초기에 약 2,000여 명 정도였는데, 점차 늘어나 효 종 때에는 약 5,000명 정도였고 그 뒤 대체로 이 수준을 유지하였다. 훈련도 감의 구성원은 대장을 비롯한 장교들, 각종 사무를 맡아 보는 員役, 실질적 인 전투력인 正軍으로서 포수와 살수, 마지막으로 보조군인 표하군의 넷으로

^{17) 《}備邊司謄錄》 193책, 순조 2년 정월 20일, 204책, 순조 14년 5월 10일 및 247책, 철종 11년 2월 10일.

¹⁸⁾ 車文燮,《朝鮮時代 軍制研究》(檀國大 出版部, 1973). 崔孝軾,〈御營廳 研究〉(《韓國史研究》40, 1983). 陸士 韓國軍史研究室,《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陸軍本部, 1968).

나눌 수 있다. 장교는 양반, 원역은 중인에서 주로 충원되고, 하급 군병인 정 군과 표하군은 주로 양인에서 충원되고 있었다.19)

장교는 무과를 거쳐서 충원되고 있었지만, 하급 군병은 처음부터 서울 안에서의 방민모집과 陞戶法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었다. 승호를 통해서 충원되던 병력은 80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모집방식을 통해서 충원되었다. 정부는 승호에 더 의존하려고 하였지만 각종 재해 때문에 승호군 차출을 자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승호를 통한 충원은 줄어들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대부분의 군병은 서울의 하층민들을 모집하는 방식에 의해 충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병은 서울에 거주하는 건실한 자를 택하여 모집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늙거나 건장하지 못한 자들도 훈련도감 군병이 되고 있었다. 훈련도감 군병은 받는 급료가 매우 적었으며, 이 시기 이미 각 부문의 고립이 일반화되고, 상공업의 발달로 필요한 인구를 점차 흡수해 가고 있었으므로, 생활에도 부족한 낮은 급료를 받으면서도 군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층민중에서도 경제수준이 낮은 빈민층이 많았다.20)

일단 훈련도감 군병이 되면 대체로 약 10~15일 정도 각종 習陣훈련에 참가하거나, 번을 갈라 사대문과 궁궐 각처의 입직, 行巡, 국왕의 호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전투에서 싸우는 것이 군대의 주요 임무이기는 했지만 평소에는 비전투적인 임무가 주담당 업무였다. 실제로 그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훈련도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병들의 급료는 일반 토목공사에 고용되는 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고 기본적으로 생활에도 부족한 것이었다. 더구나 처와 자식은 물론 부모까지 함께 살 경우 군병으로 복무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다른 생업을 찾 아서 일을 해야만 했다. 군병들은 상업과 수공업에서 주로 생계 유지의 길을 찾았고 충분한 급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정부는 이를 허가하고 있었다. 일

¹⁹⁾ 조성윤, <19세기 서울의 상비군 제도와 하급 군병>(《연세사회학》10·11, 연세대 사회학과, 1990).

²⁰⁾ 조성윤, 위의 글.

부 백목전·어물전과 같은 시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훈련도감 포수가 床廛을 세워 규모 큰 난전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군병들은 적은 자본으로 영세한 규모의 활동을 하는 행상 또는 좌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군병들에게 허가한 상업활동의 범위는 스스로 제조한 물건이나 손에 들고 다닐 정도의 소량의 물건판매에 제한되어 있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성장하는 것은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전상인과 군병들의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둘러싼 분쟁기사가 이를 말해준다.21) 수공업·상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도시 근교의 야채재배농업에 참여하거나 일반 고용노동자들과 함께 한강 연안지역의 상품, 또는 세곡의 선적·하역작업이나 각종 토목공사의 임시 고용노동자로도 활동하였다.

하급 군병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업을 비롯한 각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흉년이 들 때마다 서울주민들에게 진휼을 베풀면서 해마다 초겨울이 되면 선전관들로 하여금 유개들과 함께 군병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두꺼운 옷과식량을 지급하였다.²²⁾ 군병들의 이러한 생활조건은 19세기 후반 들어 국가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군병들의 급료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급료가 몇 달씩 밀렸다가 지급되었으며, 급료의반만 내주는가 하면, 쌀값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 돈으로 대신 주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상황은 민씨 척족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씨 척족정권의 재정지출과다, 중간착취의 심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하여 1874년 왕실숙위군으로 무위소를 창설하여 일반 군병들보다 좋은 대우를 해주자, 하급군병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군에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갔다.²⁴⁾

개항 이후 일본세력의 침투에 따른 조선사회 내부의 변동은 하급 군병들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민씨 척족정권과 개화파가 개화정책

^{21) 《}承政院日記》 304책, 숙종 10년 6월 23일.

^{22) 《}日省錄》권 11, 고종 1년 11월 9일 및 고종 2년 12월 4일.

²³⁾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초9일.

²⁴⁾ 鄭 喬, 《大韓季年史》권 1, 고종 11년.

의 일환으로 군제개혁을 추진했는데, 구식 군대를 도태시키고 일본식 군사제 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881년에 훈련도감을 비롯한 각 군영을 武衛營과 壯禦營의 2군영으로 축소 개편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 면서 사관후보생의 양성도 추진하였다.25)

별기군은 5군영으로부터 80명을 선발하고 뒤에 계속 인원을 보충하여 「임오군란」당시 4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일본군 소위 호리모토(堀本禮造)를 초빙하여 현대식 소총과 祥槍으로 무장시키고 신식 훈련을 실시하였다. 구식군영 군병들이 실직당하고 급료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달리, 별기군은 급료지급은 물론 의복 등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이 때문에 하급 군병들은 근대화과정에서 소외되고 밀려 나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으며, 앞으로 실직,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여기에 다른 도시 하층민들과 함께 소비자층으로서, 그리고 상업・수공업종사자로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측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하급 군병들은 양 측면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집단이 되었던 것이다.

(3) 하층민의 저항운동

서울에서는 19세기로 들어서면서 각종 형태의 도적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일반 민가·시전·부호가는 물론 각급 관아와 궁궐에 도적이 침입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도적들은 혼자서 또는 두셋이서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수십명이 成群作黨하여 대낮에는 주로길거리를 지나는 자들을, 밤중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부호가를 습격하였다. 도적은 주로 농민층 분해과정에서 몰락한 이농민들이 서울로 흘러 들어온 流丐, 또는 서울주민으로 정착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無恒之輩・無賴之類・雜技之類라 불리는 자들로서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많았다.26)

²⁵⁾ 박은숙, 〈開港期(1876~1894) 軍事政策 變動과 下級軍人의 存在樣態〉(《韓國史學報》 2. 고려사학회, 1997), 207~210쪽.

^{26) &}quot;근년들어 遊手가 극히 많아지고 流丐들이 成群하여 街巷에 가득하고, 촌락에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사대문밖 교외지역은 물론 도성 안에서도 도적의 집단적 출몰은 매우 빈번한 일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성 안에 사는 하층민들이 밤이면 도적으로 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오부의 각洞任掌 또는 里任掌들에게 계속 감결을 내려보내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도적체포에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었다.27)

도적사건 중에서 특히 중요시해야 할 것은 궁궐침입사건이다. 이전 시기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궁궐침입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국왕의 거처인 창덕궁은 물론 종묘, 사직단, 그리고 경희궁을 포함한 거의 모든 궁궐에 침입하고 있었다. 침입의 목적은 물론 대부분이 절도였으며, 內人房의 궁녀들을 희롱하려던 경우도 있었다. 궁궐에 침입하는 자들은 농촌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서울 각지를 전전하던 유민들을 비롯하여 궐내 잡역노동자, 하급 군병, 관청 말단직책 등의 하층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28) "궁궐담을 넘어 침입하는 것은 관부의 담을 넘는 것보다 백배 엄중하고 어려운 것"29)이라는 인식이 보여주고 있듯이 궁궐침입은 국가의 상징인 왕실의 존엄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尊王의식의 약화와 함께 도시 하층민의 의식성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국왕이 거둥할 때 가마에 투석한 사건이나, 괴서사건, 御寶위조사건, 璿譜를 비롯한 각종 족보위조사건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30) 이 사건

출몰하여 평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뭄이 심한 해에는 서로 모여도적이 되고, 閻巷의 無賴之類들이 좇아 和應하니, 비록 1,000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備邊司謄錄》202책, 정조 18년 10월 16일)라는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도적행위가 이미 막을 수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가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7) 《}左捕廳謄錄》 1책, 을미 9월 초6일 甘結五部結幕.

²⁸⁾ 궁궐침입사건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을 보면, ① 昌慶宮越牆侵入事件(《左捕廳謄錄》권 10, 신유 정월 초9일), ② 宗廟越牆侵入事件,《左捕廳謄錄》권 11, 신유 7월 초4일, ③ 宣禧宮祭器偷竊事件(《左捕廳謄錄》권 11, 신유 6월 29일), ④ 昌德宮偷竊事件(《左捕廳謄錄》권 6, 을사 3월 초4일), ⑤ 昌德宮越牆侵入事件(《左捕廳謄錄》권 10, 병진 5월), ⑥ 敦化門月臺侵入事件(《左捕廳謄錄》권 10, 병진 5월), ⑦ 孝昌墓竊盜事件(《左捕廳謄錄》권 1, 정묘 2월 25일), ⑧ 社稷壇神主偷竊事件(《左捕廳謄錄》권 10, 무오 6월) 등이 있다.

^{29) 《}左捕廳謄錄》 권 11, 신유 7월 초4일.

^{30) 《}秋官志》 3편, 考律部 寶印.

들은 도적사건들과 함께 중세사회 해체기의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어 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사회체제를 점차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종 형태의 범죄행위와 저항행위에 대해서 지배층은 가혹한 형벌을 가하며 대처하고 있었다.31) 그러나 기존질서와 기득권의 옹호를 위한 지배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도전하여 사회의 변동을 촉구하는 범죄 및 사회변동에 의하여 파생된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좀더 큰 규모의 저항운동도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자료가 밝혀진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여 도시 하층민들의 저항의식과 운동 과정 및 특성을 정리해 보자.

① 쌀폭동: 1833년 3월 9일 서울 시내에서는 경강상인 및 미곡상들의 독점과 쌀값 조작으로 쌀값이 크게 치솟고 쌀 구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사태가발생하였다. 그러자 이에 저항하는 하층민들의 대규모 민란이 일어났다.32) 난민들은 성 안팎의 저자와 거리를 휩쓸면서 서울 시내의 上米廛・下米廛・雜穀廛을 비롯한 모든 미곡전을 습격, 파괴하고 불을 질렀으며, 이어서 한강연안지역으로 나아가 경강상인들이 곡식을 감추고 쌓아 둔 집들을 15채 이상 파괴하였다. 뚜렷한 조직은 없었지만 金光憲・高億哲 등 하층민 지도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하층민들을 결집, 동원하는데성공함으로써 경강상인들과 시내의 미곡상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폭발적인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 민란은 비조직적이고 지속기간이 짧았지만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도시 하층민들의 요구를 드러낸 운동이었다. 정부지배층은 발생 초기에는 포도청 校卒을 파견해 해산시키려 하였지만, 점점 난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결국 각 영문의 군병들까지 모두 동원함으로써 겨우 진압할 수 있었다. 난민들을 체포하는 대로 주동자 여부

³¹⁾ 徐壹教、《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博英社, 1974).

³²⁾ 이 민란은 상업자본의 성장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 소비자층인 하층 민들의 '反都賈運動'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된 바 있다(姜萬吉,《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 出版部, 1973).

를 가릴 것 없이 그 날로 효수케 하였음은 지배층의 통제방식도 극단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② 뚝섬주민 저항사건: 1851년 2월에는 뚝섬주민들이 포도청 포교들의 횡포에 맞서 집단적인 저항을 전개한 바 있었다. 뚝섬은 한성부 행정 관할구역 중 가장 외곽지역이었고 한강 상류지방의 전곡·목재·시탄 등의 집산지로서, 柴木商을 비롯한 각종 상인들이 몰려들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민들이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뚝섬처럼 도시 하층민들이 집단거주하는 교외의 벽촌은 양반·부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비해 오부 관원을 비롯한 하급 관리들의 대민수탈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실제로 심한 수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사건은 좌우포도청의 군관과 포교들이 뚝섬주민 高德哲을 뚜렷한 이유없이 붙잡아 가면서 시작되었지만,33) 이는 단지 뚝섬주민들의 잠재되어 있던불만을 활성화시킨 촉발요인일 뿐이었다. 뚝섬지역의 주민들은 지배층으로부터 억압 또는 수탈당하고 있다는 공통된 감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고, 지배권력의 대행자로서 포도청을 비롯한 하급 관원들과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이 체포사건을 계기로 활성화된 것이며 포도청 군관과 교졸들이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된 것이었다.

운동의 동원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기제는 주민들의 불만을 결집시킨 향촌조직 책임자인 존위와 중임들이었다. 뚝섬지역의 행정책임자인 존위는 양반이 맡고 있었으며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였다. 그밑에 중임 또는 임장이 평민들 중에서 선출되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일종의 자문기구로 볼 수 있는 老人契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마을책임자인 존위와 중임들이 계획을 짜고 노인계의 자문을 받는 한편, 기존 연락망과 조직에 의해 뚝섬 전 지역의 주민을 소집, 동원시킨 것이며, 운동의 과정에서 중임인 韓宗浩가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주민 중에 훈련도감 군병과임노동자들을 묶어 선도집단을 형성하여 전 주민을 이끌었던 것이다.34)

^{33) 《}訓局謄錄》권 65, 신해 3월 4일. 《右捕廳謄錄》6책, 신해 2월 일.

③ 목수집단 저항사건: 1860년 5월 1일에는 목수집단이 좌변포도청· 우변포도청·좌변군관청·포도대장 저택을 차례로 습격하여 청사와 저택을 파괴하고 교졸·종사관·군관 수십 명을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궁궐건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목수들 중에 白季昌이란 자가 공사를 위해 지급되는 철물 가운데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다가 적발되어 좌변포도청 기찰포교들에게 잡혀감으로써 비롯되었다. 서궐(경희궁)·二字處所·三字處所 등 여러 작업장에 흩어져 일하던 목수들은 동료가 포도청에 잡혀갔다는 소식을들자, 각 처소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모여 掌木手의 지휘로 포도청을 습격하였고, 동료가 잡혀간 좌변포도청뿐만 아니라 우변포도청· 좌변군관청·포도대장 저택까지 모두 습격 파괴한 것이다.35)

이 사건의 직접 원인은 철물의 潛賣에 있었다. 당시 목수들의 목재와 철물의 잠매는 자주 있었고, 목수들 사이에서는 예삿일로 여겨질 정도로 낮은임금을 보충하는 수단이었다. 목수들은 철물의 잠매는 결코 도적질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었으므로, 철물잠매로 동료가 포도청에 잡혀간 사실은 목수집단 자체에 대한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36) 또 이 사건은 철물잠매를 계기로 일어나긴 했지만, 목수들이 평소 포도청 관리들로부터 심한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되다가 철물잠매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들의 저항이 동료를 잡아간 좌변포도청뿐만 아니라 포도청 전체를 대상으로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들의 불만이 조직적인 행동으로 발전한 것은 목수동업조합인 木房의 조직력 때문이었다. 이 시기 서울의 목수들은 목방을 중심으로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시장을 상대로 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각종 토목공사에 모군으로 고용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목수는 특수한 기술을 지닌 기술자였다. 목수들의 동업조합은 邊首 또는 掌木手를 중심으로 조직된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토목공사에 참여할 때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집단별로 참

^{34) 《}右捕廳謄錄》 6책, 신해 2월.

^{35) 《}右捕廳謄錄》 14책, 경신 5월 17일.

³⁶⁾ 위와 같음.

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목수들의 불만은 목수집단 구성원으로서의 동료의식과 목방조직을 통해 엮어질 수 있었고 조직적 저항이 가능했던 것이다.

④ 그 밖에 군병집단 저항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었다. 1863년에 금위영소속 군병들이 급료로 지급되는 쌀의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이다가 주동자들이 체포되면서 진압된 사건이 있었으며,37) 1877년에는 훈련도감 군병들이 급료를 여러 달 지급받지 못하자 榜文을 작성하여 길거리에 붙이고 민중들을 모아 시위를 전개하다가 역시 주동자들이 체포됨으로써 진압된 사건이 있었다.38)

1882년 2월 즉「임오군란」불과 4개월 전에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일부민중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규모 군병집단의 폭동이 있었다. 좌변포도청 포교들이 동대문 부근 동리에서 주민들을 함부로 잡아가다가 동민들에게 오히려몰매를 맞고 도망하였는데, 도망간 포교들이 다시 다른 교졸들을 데리고 와서 동대문 일대의 동리주민들은 몰론, 지나가던 훈련도감 군병들과 동대문守門군병들까지 닥치는 대로 체포하여 포도대장 저택으로 끌고 갔다. 끌려간동리주민들과 군병들은 모두 31명으로 4명은 맞아 죽고 나머지는 포도청 옥사에 갇혔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훈련도감 군병들은 지휘자 卓琦桓을 선두로수백 명이 일부 동민들과 함께 포도청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갇혀 있던 군병들과 주민들을 구출하고 시체를 꺼내는 한편 포도청 청사를 파괴하고 포교들을 구타하였다. 39)

앞의 두 사건은 국가재정의 위축으로 군병들에게 급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점이 원인이었고, 뒤의 사건은 포도청 관리들의 행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보다 넓게는 사회체제의 모순이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나타났고, 이에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지배층과 갈등관계에 있던 군병들이 군대조직 하부의 연결망을 동원조직으로 이용하면서

³⁷⁾ 李瑄根,《韓國史-最近世篇》(乙酉文化社, 1961), 470쪽,

^{38)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8월 10·11일. 《高宗實錄》, 고종 14년 8월 10일.

^{39) 《}左捕廳謄錄》 18책, 임오 3월 15일 · 17일.

공통된 적의 표출대상인 지배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간략히 검토한 네 유형의 사건은 제각기 그 전개구조와 동원조직, 지도자, 그리고 공격대상에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도시 하층민들이 지배층으로부터 당하는 각종 피해와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관철시키려 했던 저항우동이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서울 하층민의 저항운동은 19세기 전 시기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던 농민들의 민란, 또는 농민전쟁과 함께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변동과정에 조응하여 새롭게 발전하던 도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적 모순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세사회 구조의 해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경험의 축적이 「임오군란」이라는 대규모 저항운동을 가능케 한 바탕이 되었다.

2) 임오군란의 전개과정

(1) 운동의 발생과 확산

가. 운동의 발생

일반적으로 都捧所사건과 6월 9일 및 10일 이틀에 걸친 봉기만을 「壬午軍 亂」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으로 파악해 왔으며, 대원군정권의 성립 이후는 사후 처리과정으로만 설명해 왔다. 그러나「임오 군란」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도시 하층민들을 그들의 주요 사회조직인 향촌조직과 군대조직을 통하여 보다 조직적인 세력으로 규합하여 발전시켰던 대규모 사회운동이었다. 그리고 일본 군과 청군이 들어와 이들과의 대항 속에서 결국 대원군정권이 무너지고 하급 군병을 포함한 도시 하층민세력이 진압당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된 우동이었다.

도봉소사건이란 1882년 6월 5일 선혜청 창고 도봉소에서 무위영소속 옛훈 련도감 군병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조그만 충돌을 가리킨 다. 경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당시 새로 창설되어 신식 훈련을 받는 별기 군이 후한 대우와 높은 급료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무위영소속 옛훈련도감 군병들의 급료가 13개월씩이나 밀려 있었는데, 마침 전라도 세곡이 서울에 도착하자 정부는 밀린 급료 가운데 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일 아침 군병들은 도봉소로 모여들어 급료로 쌀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지급받은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고, 양도 규정에 못미치는 적은 것이었다. 군병들은 급료받기를 거절하였고 그대로 지급하려는 말단관리들—무위영 영관, 창고지기(庫直)—과 군병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마침내 군병들이 관리들을 구타하고 투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사건이 선혜청 당상 閔謙鎬에게 보고되고, 그는 즉시 훈련도감 군병들 가운데 金春永・柳卜萬・鄭義吉・姜命俊 등 4명을 주동자로 잡아들여 포도청에가두었다.40)

그 뒤 서울 하층민들 사이에서 잡혀간 군병 4명이 이미 혹독한 고문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곧 사형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군병들은 물론 왕십리를 비롯한 각지의 하층민들에게 퍼져 나갔다.41) 소문은 도시 하층민들의 관심을 도봉소사건에 집중시키고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만들어 잡혀간 군병들을 사형에 처하려는 정부의 통제방식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미 악화되어 있으면서도 막연하고 잠재적이던 불만과 적대의식을 구체화시켜 간 것으로 생각된다.

점차 구체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던 잠재적 불만과 저항의식을 활성화시켜 선동하고 조직한 것은 왕십리에 거주하는 하급 군병들과 향존책임자인 洞任・中任들이었다. 왕십리지역은 사대문밖 교외의 하층민들이 주로 정착하는 지역이었다. 이 곳에는 특히 훈련도감의 하급 군병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과 함께 다른 하층민들과 섞여 살면서 상업・수공업・농업 등의 다른 직업에도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왕십리는 서

^{40)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6월 초5일.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년 6월 초9일.

[《]推案及鞫案》321型,壬午大逆不道罪人長孫等鞫案(앞으로〈長孫等鞫案〉으로 줄 여 표기함), 임오 8월 22일.

⁴¹⁾ 黄 玹, 《梅泉野錄》, 임오 6월 초9일.

울 근교의 상업적 농업 즉 야채재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었으므로 상업적 농업에 종사하는 소상품 생산자적 농민과 농업 고용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했다. 왕십리지역에는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하층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급 군병들은 많은 수가 거주하였고 따라서 촌락공동체 내부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하급 군병이 마을의 중임(또는 行首)을 맡고 있던 것⁴²⁾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잡혀간 군병 4명 가운데 3명이 왕십리 거주자였고, 왕십리에는 그들의 형제, 또는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들 또한 모두 군병이었다. 43) 이 같은 지역조건이 운동의 발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원은 김춘영의 아버지 金長孫과 유복만의 동생 柳春萬이 모여 통문을 작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44) 하급 군병들 사이에서 나이가 많은 김장손이 통문을 작성하였고 東郊와 西郊의 군병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로 돌려졌다. 45)

통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대체로 도봉소사건으로 잡혀간 4명의 동료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훈련도감 군병들에게 이를 위해서 9일 아침 동별영으로 집합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46) 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무장항쟁이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면 통문은 김장손이 거주하는 동부 왕십리 新村에서 시작되어 왕십리 陽地村으로 보내졌고, 양지촌 중임을 맡고 있는 훈련도감 군병 文昌甲이 이웃집에 사는 군병 鄭雙吉을 시켜 통문을 서교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47) 泥浦里의 辛興萬·朴鳳文, 鷰尾亭洞의 朴興根

^{42)〈}長孫等鞫案〉罪人文昌甲案。

^{43)〈}長孫等鞫案〉、임오 8월 22일 罪人金長孫・罪人鄭義吉・罪人柳卜萬.

⁴⁴⁾ 通文은 도적집단, 보부상뿐만 아니라 일반 향촌주민들도 봉기를 일으킬 때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계획을 알리는 문서로서, 조선 후기 민란의 준비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임오군란'때의 通文은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 수없도록 여러 명이 沙鉢처럼 동그랗게 서명하는 '沙鉢通文'이었다(《承政院日記》, 고종 19년 8월 21일).

^{45)〈}長孫等鞫案〉鄭雙吉案.

⁴⁶⁾ 위와 같음.

^{47)〈}長孫等鞫案〉文昌甲案.

같은 군병들이 통문에 호응하여 동별영으로 모였다고 밝히고 있다.48) 따라서 통문이 전파된 지역은 동부 왕십리지역의 신촌·양지촌을 비롯한 각 마을과 이포리·연미정동·沙斤節里 등 동교 각 지역과 서교의 여러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서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군병들이 집단거주하는 靑坡·梨泰院 등지로 볼 수 있다.

통문이 각 마을로 전달되면 마을의 행수, 또는 중임들이 이를 받아 보고다른 마을로 넘긴 뒤, 마을사람들을 모아 놓고 통문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동원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군병 成仁默의 공초에 보면, 그가 사는 왕십리 한 마을의 경우 8일 밤에 마을 洞領・所任들이 통문에 따라 동리사람들을 모아 놓고 도봉소사건으로 잡혀간 동료 4명을 구하기 위해 다음날 等訴하러 갈 것임을 말한 뒤 좇지 않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9)

중임·동령·소임·행수 등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은 마을단위의 행정책임자들이다. 이들은 한성부의 하위조직 담당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촌락공동체의 지도자였으며 평민들 가운데서 선발 또는 차출되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들이 동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위의 사료를 통해 볼 때 동임들에 의해 주민동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중임·행수 등이 주민들을 결집시키는 한편, 먼저 계획을 세우고 통문을 작성했던 군병들이 裵長春·성인묵같은 하급 지휘관들과 서로 연락을 맺으며 군병집단의 지휘를 위한 준비를하고 있었다.50)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매우 컸었다. "왕십리 동리에서 늙고 어린 것할 것 없이 일제히 입성하였다"·"군총 여부에 상관없이 그 때 왕십리 一洞은 힘을 합쳐 함께 들어왔다"51)고 한 데서 호응 정도를 알 수 있다. 물론 9일 아침 동별영에 모인 것은 대부분 훈련도감 군병들인데 거의 대부분 참가

^{48)《}推案及鞫案》329책, 임진 不道罪人弘根等鞫案, 1892년 12월 罪人朴弘根案・罪人金興燁案・罪人辛興萬案・罪人朴鳳文案.

^{49)《}左右捕廳謄錄》 권 2. 병술 10월 25일 罪人成仁默供案.

^{50) 〈}弘根等鞫案〉罪人朴萬吉案·罪人鄭景石案. 《推案及鞫案》327郊,丙戌謀反大逆不道罪人仁默等鞫案 增全 1월.

^{51)〈}長孫等鞫案〉罪人洪千石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騎摠·隊摠 이하 대부분의 하급 군병들이 모두 회합에 참가하고 있었다.52)

나, 운동의 확산과정

동원 초기과정에서 향촌조직 책임자들과 군병의 하급 간부가 연합적으로 동원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9일 아침부터 운동의 실질적인 지휘는 군병의 하급 간부들이 담당하였다. 무위영소속 옛훈련도감 군병들은 동별영에 집결하여 김장손·김춘영·성인묵·배장춘과 같은 간부들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53)

이들은 먼저 집단 等訴를 했다. 일단 제도화되지 않은 통로이기는 하지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택한 대상은 자신들의 군 지휘책임자인 武衛大將 李景夏였다. 그들은 민겸호의 부당행위와 동료들의 구명을 호소했다. 하지만 실권이 없던 이경하는 민겸호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군병들은 안국동에 있던 선혜청 당상 민겸호의 집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민겸호는 집에 없었고, 호소할 길을 잃은그들은 때마침 만난 도봉소 고직이 민겸호 집안으로 피신하자 집에 난입하기에 이르렀다.

두 차례의 등소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군병집단은 민겸호의 저택을 부수고 불질러 버린 뒤 등소라는 비폭력적 수단을 포기하고 무력행사에 돌입하게 되었다. 군병집단이 대원군을 찾아 운현궁에 갔지만, 이것은 등소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행동의 정당성을 대원군으로부터 확인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권력을 잃고 게다가 지난해 쿠데타계획의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던 대원군은 주동자인 김장손·유춘만 등과 면담하는 한편, 그의 심복인 許煜에게 군복을 입고 그들의 지휘그룹에 가담하도록 명령하였다. 대원군의 묵인을 얻은 군병들은 비로소 본격적인 무장봉기를 전개하게되었다.54)

^{52) 〈}弘根等鞫案〉罪人金興燁案.

^{53)〈}長孫等鞫案〉罪人金長孫案·罪人鄭義吉案.

[〈]弘根等鞫案〉罪人鄭萬吉案.

[〈]仁默等鞫案〉罪人成仁默案.

군병들은 무력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동별영에 집결하여 창고를 열어 각종 무기를 꺼내 무장하고 어영청 新營의 무기고에서도 무기를 탈취해 무 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그들은 무위영과 장어영의 다른 군병들에게 연락하는 한편 다음 단계의 행동계획을 세웠다.55)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난동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운동이 확산되어가자 이경하를 보내 조사하고 회유하여 해산시키려고 했다. 이경하가 동별영을 찾아가 전교를 내보이며 설득하려 했으나 무위대장의 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 오히려 군병들은 그를 수행한—평소에 군병들에게 원한을 샀던 —무위 집사 여러 명을 살해한 뒤, 이경하를 쫓아내고 말았다.56) 사태가 위급해지자 정부는 우선 책임자를 문책하는 의미에서 무위대장 이경하, 선혜청당상 민겸호, 도봉소 당상 沈舜澤을 파직시키고, 무위대장 후임에 대원군의장자 李載冕을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하는 한편57) 무력에 의해 진압할방법을 찾고 있었다. 좌・우포도청에서 교졸을 동원하고 將臣들이 나와서 막으려 하였고58) 別破陣을 동원시켜 진압하자는 논의까지 있었다.59) 그러나 서울수비를 담당하는 주력부대인 훈련도감 군병들이 저항운동을 일으킨 상황에서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만한 병력은 없었다. 지배층은 속수무책이었고사태를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오후에 마침내 군병들은 3대로 나뉘어 조직적인 행동을 개시했다. 이 때부터 영세상인, 수공업자를 비롯한 도시 하층민들이 총융청·금위영과 같은

⁵⁴⁾ 군병들이 대원군을 찾아간 것은 물론 그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것이지만 대원군은 군병집단이 공격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대원군이 군병에게 이야 기했던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그의 암시 또는 지시가 군병집단이 한층 조직적이고 분명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촉진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金正起,〈大院君 납치와 反淸意識의 형성(1882~1894)〉,《韓國史論》19, 서울大 國史學科, 1988, 482쪽).

⁵⁵⁾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초9일.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6월 초10일.

⁵⁶⁾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초9일.

^{57)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6월 초9일. 《日省錄》, 고종 19년 6월 초9일.

^{58)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6월 초9일.

⁵⁹⁾ 魚允中,《從政年表》, 고종 19년 6월 초8일.

다른 군영의 군병들과 함께 대열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제1대는 鍾街를 휩쓸면서 포도청을 습격하여 갇혀 있던 김춘영·유복만·정의길·강명준 등을 구출해 내고 다른 죄수들을 풀어 준 뒤, 다시 의금부로 가서 옥문을 깨뜨리고 모든 죄수들을 풀어 놓고, 감금중인 척사유생 白樂寬을 구출하여 가마에 태우고 동별영으로 돌아왔다. 군병들이 그를 군중들 앞에 내세우고 지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강화유수 閔台鎬를 비롯한 민씨 척족정권의 중요 인물들과 개화과관료들의 집을 차례로 습격하고 파괴하는 한편, 민비가 제사지내던 서울 근교의 중요 사찰을 부수고 불지르는 행동을 밤늦게까지 계속했다.60)

제2대는 별기군이 신식 훈련을 받는 교련장소인 下都監으로 갔다. 하도감에는 별기군 400명이 대부분 귀가하여 없었고, 20여 명의 별기군과 별기군 책임자, 그리고 일본인 몇몇만이 남아 있었다. 하층민들은 영관 鄭龍燮을 죽이고 洋槍을 모두 부숴버리는 한편, 교련장에서 銅峴・屛門 쪽으로 도망가던 일본인 교련관 육군소위 호리모토(掘本禮造)를 쫓아갔다. 호리모토는 쫓아간 상인 孫順吉・孔致元과 교련소에서 잡일을 하던 尹順龍 등에게 맞아 죽었다.61)

시위대는 3시쯤 남대문 근처 노상에서 하도감으로부터 도망나와 일본공사 관으로 가고 있던 육군어학생 岡內恪·池田平之進, 사비어학생 黑澤盛信 등 3명을 발견하자 구타해서 죽인 뒤, 이들을 구하러 달려온 일본공사관 외무순사 川上堅輔・池田爲善・本田親友 등 3명도 죽이고 말았다.62)

^{60)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6월 초9일.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 6월 초11일.

[《]推案及鞫案》323型, 癸未罪人樂寬鞫案.

鄭 喬, 《大韓季年史》 권 1, 임오 하 6월.

^{61)《}左右捕廳謄錄》, 임오 7월 23일 罪人孫順吉供案・罪人孔致元供案, 7월 29일 罪 見尹順龍供案.

金正明 編、《日韓外交資料集成》 刊 7、尹雄烈との面談、136~137等。

宮武外骨、《壬午鷄林事變》, 亡命者尹雄烈の談話(東京, 1932).

黄 玹.《梅泉野錄》권 1. 임오 6월 초9일.

魚允中,《從政年表》, 고종 19년 6월 18일.

⁶²⁾ 金正明,《日韓外交資料集成》 권 2, 朝鮮京城激徒暴動顚末記, 97~102쪽. 宮武外骨, 앞의 책, 24쪽.

제3대는 전임 선혜청 당상이며 지금은 경기도관찰사인 부정축재의 대표자 金輔鉉을 목표로 돈의문 밖에 있는 경기감영을 습격하였다. 63) 습격하러 가는 도중에 서대문 근처에 사는 민중들이 크게 합세하였다. 그러나 목표 인물인 김보현이 없었으므로 대신 감영을 파괴하고 무기고에서 각종 무기를 있는 대로 꺼내 일반 도시민들도 무장하였다. 64) 이들은 곧장 가까이 있는 일본공사관 淸水館으로 몰려갔다.

일본공사관에서는 이미 별기군 영관 尹雄烈로부터 봉기가 일어난 사실과 자위책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받아 놓고 있었으며,⁶⁵⁾ 남대문 근처에서 일본인 3명이 피습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순사를 파견하였다.⁶⁶⁾ 또 差備譯官 李承漢이 찾아와 공관원 모두 몸을 피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는 만약 일이 생기면 반드시 조선정부가 구원병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계만 엄중히 하고 있었다.⁶⁷⁾

하층민 시위대의 포위공격은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되었다. 하층민들은 총과활을 쏘면서 정문으로 밀고 가려고 했지만 일본인들의 총격으로 후퇴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중들 가운데 운동에 합세하는 자들이 갈수록 늘어났고취각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올렸다. 그들은 정문돌입이 어렵자 공사관 옆에 붙어 있는 민가에 불을 놓았다. 불은 判接官출장소로, 또 이어서 공사관 오른쪽의 차비관숙소로 옮겨 붙었다. 불이 인근집 4채를 태우고 공사관으로 옮겨 붙을 상황에 이르자, 하나부사공사는 정부의 지원이 있으리라는기대를 포기하고 기밀문서를 소각하며 공사관에 불을 놓은 다음, 총을 쏘면서 정문을 돌파하여 탈출했다. 그들이 우수한 성능의 신식 총을 마구 쏘아대고 있어서 하층민은 이들을 추격할 수가 없었다.68)

^{63)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6월 초9일. 《日省錄》, 고종 19년 6월 초9일.

⁶⁴⁾ 보기를 들면, 冷洞에 사는 수공업자 安興俊은 같은 동네사람 黃京順과 함께 경기감영을 파괴하고 총을 들고 나와 일본공사관 공격에 참여하고 있었다(《左右捕廳謄錄》, 임오 7월 24일 罪人安興俊供案).

⁶⁵⁾ 宮武外骨, 앞의 책, 118쪽.

⁶⁶⁾ 金正明, 앞의 책, 권 2. 앞서 밝힌 대로, 3명의 일인은 물론 파견된 순사들까지 모두 피살되었다.

⁶⁷⁾ 金正明, 위의 책, 97쪽.

공사관을 탈출한 일본인들은 구원을 청하려고 경기감영으로 갔으나, 이미 공격을 받아 파괴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대궐로 들어가 보호를 요청하려 고 남대문에 이르렀으나 문이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양화진 을 거쳐 인천으로 달아나고 말았다.⁶⁹⁾

일본공사관이 모두 불타고 공격이 끝나자 다른 하층민들은 일단 귀가했지만 하급 군병들은 다시 동별영으로 집결하였다. 그들은 동별영에서 밤을 지새며 다음날의 행동계획을 짰고, 유춘만은 왕십리로 돌아가 각 마을주민들이다음날 아침 모두 입성하도록 전달하였다.70)

10일 아침 동별영에서 밤을 지낸 하급 간부들과 군병집단은 왕십리를 비롯한 사대문밖 교외지역에서 쏟아져 들어온 자들 및 성내에 거주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대규모 세력을 형성해서 전날보다 훨씬 강력해진 힘으로 조직적 활동을 개시했다.71)

이 날 저항운동의 주요 공격목표는 민씨 척족정권의 최고 권력자이며 상징적 존재인 민비였다. 하층민세력은 먼저 興仁君 李最應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살해하고, 노상에서 閔昌植을 살해한 뒤 창덕궁 돈의문으로 몰려갔다.72) 대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 반란군민들은 민겸호·李憲 등의 대신과李敏禮를 비롯한 많은 내시들을 죽였다.73) 김보현은 대궐로 급히 들어오다가 禁川橋 위에서 군병 金興燁의 도리깨에 맞아 죽었다.74)

국왕 고종은 사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임을 알고 대원군의 입시를 명령한 뒤 곧 別殿으로 피난했고,75) 민비는 무예별감 洪在羲의 도움을 받아 대궐 밖으로 피해서 尹泰駿의 집으로 숨었으며 반란이 수그러진 때를 틈타

⁶⁸⁾ 金正明, 위의 책, 97~102쪽・106~114쪽. 宮武外骨, 앞의 책, 24쪽.

黄 玹, 《梅泉野錄》, 임오 6월 초9일.

⁶⁹⁾ 金正明, 위와 같음.

⁷⁰⁾ 金正明, 위의 책, 141~142쪽.

^{71)〈}弘根等鞫案〉罪人金興燁案.

⁷²⁾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초10일. 黄 玹, 《梅泉野錄》, 임오 6월 초10일.

⁷³⁾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초10일.

^{74) 〈}弘根等鞫案〉, 罪人金興燁案.

⁷⁵⁾ 黄 玹, 《梅泉野錄》, 임오 6월 초10일.

충청도 충주목 閔應植 鄕弟로 옮겼다. 하충민들은 민비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사방을 수색하였고 대궐 안은 계속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76)

한편 이 날 아침 정의길 등이 수백 명의 군병을 이끌고 일본공사관원들을 뒤쫓아 인천으로 갔다. 일본인들은 인천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도망갈 배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인천에 도착한 경군이 인천부의 군병들과 합세하여 이들을 공격하였다. 격렬한 싸움 끝에 일본인들은 6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한채 도망하다가 마침 정박중이던 영국선박에 구조되어 일본으로 떠났다. 이싸움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농민들도 참여하였으며 일본인들은 공사관에서보다 훨씬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77)

(2) 정치적 차원에서의 운동의 실현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저항운동이 서울 시내 전역은 물론 왕궁까지 휩쓸었고 더 이상 무력과 기존 정치세력집단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고종은 대원군의 집권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부터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대원군이 품결한다"는 왕명이 내려짐으로써 대원군은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⁸⁾ 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운동에 참가하고 있던 군병을 비롯한 도시 하층민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1단계 정책을 내놓았다. 고종의 自責教旨를 반포하여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⁹⁾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여 三軍府로 바꾸며,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폐지하고 2영을 다시 5영으로 복구시킴으로써 민씨 척족정권이 추진한 개화정책을 백지화시킨 것이다.⁽⁸⁾

⁷⁶⁾ 黄 玹, 위와 같음.

鄭 喬, 《大韓季年史》 권 1, 하6월 초10일.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 6월 초10일.

⁷⁷⁾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11일.

金正明. 앞의 책. 141~142쪽.

宮武外骨, 앞의 책, 24쪽.

[《]左右捕廳謄錄》 권 1. 임오 9월 27일 罪人朴昌ト供案・30일 仁川座首鄭學霖供案.

^{78) 《}左右捕廳謄錄》 권 1. 위와 같음.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 6월 초10일.

[《]政治日記》권 14. 임오 14년 6월 초10일.

⁷⁹⁾ 金衡圭, 위와 같음.

대원군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동시에 급료의 정상적인 지급을 약속하자 운동은 점차 가라앉았다. 그러나 민씨 척족정권의 핵심인물인 민비를 살해할 목적으로 궁궐에 침입했던 군병을 비롯한 하층민들이 민비를 찾아내 처단할 것을 계속 주장하며 왕궁에서 물러갈 것을 거부하였다. 결국 대원군은 민비의 國喪을 선포하였고, 비로소 이틀에 걸친 대규모의 운동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81)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민씨 척족정권이 무너지고 대원군 2차정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한말의 사회변동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민중들의 힘을 기반으로 대원군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이들의 사회변혁의 요구가 정당성을 획득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대원군 2차정권은 6월 10일부터 청군에 의해 납치당한 7월 13일까지 33일간지속되었는데, 대원군정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군병들의 실질적인 힘의장악과 도시 하층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기반 때문이었다.

운동이 일단 가라앉으면서 일반 하층민들은 모두 흩어졌지만 군병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 군병들은 자신들이 지녔던 무기는 물론 무기고에 남아 있던 무기들까지도 모두 탈취해 내어 무장하면서 사대문과 성안 곳곳을 경비하고 서울의 치안을 장악하였다. 82) 군병들이 쉽게 흩어지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군조직체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은 모두 하급 군병들이었으므로 일관된 상하관계와 지휘체계에의해 하나로 결합된 것은 아니었고, 영향력 있는 하급 간부들의 지휘에 따라분산적으로 결합된 연합적인 형태였다. 군병들은 소규모 부대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도성경비를 담당하는 한편 민씨 척족세력과 개화과, 중인 부호 등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였다.

군병들은 서울의 곳곳을 경비하면서 민씨 관련인물과 개화파의 색출작업

⁸⁰⁾ 위와 같음.

⁸¹⁾ 위와 같음.

^{82)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6월 11일.

金衡圭, 《靑又日錄》, 고종 19년 6월 24일.

또한 尹雄烈이 10일 저녁 도망갈 때 이미 사대문은 군병들이 경비하면서 도 망자를 잡으려고 기찰하고 있었다고 한다(金正明, 앞의 책, 권 7).

을 벌여 "일본인에게 친한 자와 개화에 뜻을 두었다고 알려진 자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으며"83) 그리고 "군병들이 정동으로 가서 이미 살해된 민씨 척족대신 閔致庠의 집을 부수고, 倭別技에 소속된 자, 또는 나라에 유명한 무당과 박수의 집 등을 부수지 않음이 없었으며" 중인 부호가를 70여 채나 부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84) 또한 민비의 국상으로 설치된 望哭處所에 분향하려고 나선 양반관료들을 군병들이 길 위에서 가로막고 붙잡아 봉욕을 주며 가마를 부수고 있었기때문에 곡하러 가는 양반관료들도 찾아보기 어려웠다.85) 양반지배층과 부호들은 계속되는 보복과 폭력행사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몰래 시골로 도망가는 자들이 줄을 이었다.

이 때 보부상집단이 서울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대원군은 하층민들에게 무기를 모두 풀어 주어 군병들과 함께 도성을 방비하도록 했고, 도시하층민들은 무기를 들고 도성을 수비하였으나 그것은 소문임이 밝혀졌다.86)

이미 민영익·윤웅렬을 비롯한 민씨 척족세력과 개화파 부호들의 상당수가 서울 사대문을 빠져나가 도망하였으므로 대원군은 전국적으로 수색령을 내렸다. 중요 인물의 容貌把記를 전국에 띠우는 동시에 포도청 포교들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비밀리에 어사를 전국 8도에 내려보내 피난간 자들을 조사시켰다.⁸⁷⁾ 한편 군병들은 서울 시내 각처에서 도망간 자들의 가산을 모두 찾

⁸³⁾ 金正明, 위의 책(권 2), 梅津中尉聽取朴永丰情報, 141쪽,

⁸⁴⁾ 金衡圭, 《靑又日錄》, 고종 19년 6월 11일. 鄭 喬, 《大韓季年史》, 고종 19년 7월.

⁸⁵⁾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11일.

⁸⁶⁾ 보부상침입설에 관한 기록은 각종 사료에 나타나 있다.

朴周大,《羅巖隨錄》, 고종 19년 6월 12일.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 6월 12일.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12일 · 13일.

보부상과 승도들이 도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은 비록 헛소문으로 그쳤지만, 중요한 것은 대원군과 도시주민들이 이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며, 이 때문에 도시주민들이 도망가느라고 일대 혼란에 빠졌고, 다른 한편 침입에 대비해방어준비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대원군, 도시 하층민(군병 포함), 그리고 보부상과 민씨 척족정권 각각의 이해관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좀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⁸⁷⁾ 金衡圭, 《靑又日錄》, 고종 19년 6월 24일.

아내고 있었고, 성밖으로 나아가 도망간 자들의 색출작업을 펴면서 곳곳에서 보부상의 왕래를 금지시키고 근교의 유명한 사찰들을 파괴하고 다녔다.88) 하 층민의 대규모 운동과 정권이 바뀐 소식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그 여파 를 미치고 있었다. 전국 각처에서 土匪들이 봉기하고 있었던 것은 그 한 표 현이었다.8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원군은 정권수립에 따른 많은 문제에 부딪치면서 민중들의 사회개혁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혁안을 내놓고 있었다. 군병을 포함한 도시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립되었지만, 대원군정권은 결코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정권은 못되었다. 대원군정권은 어디까지나 지배층의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봉건적인 사회체제를 회복 강화하려는 정권이었다.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대원군정권의 수립을 바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원군정권은 민씨 척족세력과는 달리 양반귀족관료·대지주·특권 상인세력을 견제하면서 도시 하층민을 포함한 민중들의 요구를 상당한 수준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이다. 1차 집권시기에 대원군정권이 실시했던 여러 개혁의 내용은 현 지배층의 이익을 일정하게 줄이고 도시하층민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체제를 안정시키고 왕권강화를 꾀한 것이었다.

둘째, 대원군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가 실체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다. 1차 대원군 집권시기 동안 민중들에게 부각되었던 대원군의 이미지는 대원군이

金正明, 앞의 책(권 7), 135~140쪽.

⁸⁸⁾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22일.

⁸⁹⁾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29일.

⁹⁰⁾ 대원군정권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개혁적인 입장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글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金容燮、〈韓末日帝下의 地主制-事例1: 江華金氏家의 秋收記를 통해서 본 地主經營〉(《東亞文化》11, 1972).

^{-----, 〈}朝鮮後期 軍役制 釐正의 推移와 戸布法〉(《省谷論叢》13, 1982).

梶村秀樹、〈朝鮮近代史若干の問題〉(《歷史學研究》288, 1964).

藤間生大、《近代東アジア世界の形成》(東京;春秋社,1977).

민중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형태로 남아 있었으며, 민씨 척족세력이 일본세력을 끌어들이며 실시한 개화정책과 경제의 혼란은 쇄국정책을 고수했던 대원군의 이미지를 한층 이상적인 형태로 높여주고 있었다.

셋째 이유는 도시 하층민들의 정치의식의 한계에 있었다. 그들은 민씨 착 족정권을 무너뜨렸으면서도 새로운 권력관계의 창출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존 세력관계의 틀 안에 있던 대원군세력에 자신들의 요구의 실현을 기대하였다. 그들의 정치의식은 아직 자신들의 요구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세력집단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요구를 대변하여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세련화시키는 지식인들의 영향력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민중들은 대원군정권이 적어도 일본을 포함한 자본주의세력을 막아 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일본세력을 끌어들이고 민중을 외면한 민씨 척족정권과 개화파·대지주·특권상인세력을 누르고 민중적인 방향으로 내정을 개혁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대원군정권은 정권수립에 따른 많은 문제에 부딪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원군은 민비의 국상을 예정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國葬都監・殯殿都監・山陵都監 등을 설치하여 장례절차를 강행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대신들이 민비의 시체가 없는 가운데 장례 치르는 것을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폄으로써 장례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91)

또한 대원군은 신정권을 수립하면서 민씨 척족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고종 친정 10년간 대원군세력이 철저하게 제거당한 결과 신정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크게 부족하였다. 대원군이 우선 등용한 인물은 남인계열에 속하는 노정치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임명을 받고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때문에 대원군은 친대원군계열의 정객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옥되었거나 정배당한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비상수단을 썼다. 그러나 이들 석방된

⁹¹⁾ 權錫奉, 〈壬午軍變〉(《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405~406쪽.

인물들은 대부분 대원군정권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집권기간이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다.92) 사실상 대원군이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이미 그의 세력이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었으며, 재정비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원군정권이 제시한 몇 가지 개혁안은 대체로 민씨 척족정권이 개화정책으로 추진했던 것들을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고 각종 제도적 모순, 즉 부차적인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민중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놓은 것이었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① 군병급료의 정상적인 지급, ② 과다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미납한 10읍 수령체포, ③ 鑄錢의 금지, ④ 각종 都賈금지, ⑤ 辛甘菜와 海紅菜진상을 비롯한 잡세금지 등이었다.93) 이러한 정책은 대원군 1차집권 당시의 정책노선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아직 새로운 방향에서의 개혁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3) 외세의 개입과 운동의 좌절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과 청국은 각각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무력을 바탕으로 조선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축을 벌었다.94)

하나부사공사가 살아 남은 공사관원들과 함께 영국배로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한 날은 6월 15일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외무성에 군란의 발생을 무전으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부산과 원산도 위험에 처해 있으니, 곧바로 군함을 파견하여 거류민을 보호하고 서울의 상황을 함께 탐지할 것이며, 앞으로 조선정부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강력한 병력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

^{92)《}日省錄》, 고종 19년 6월 10·11·14·15일. 權錫奉, 위의 글, 406~407쪽.

^{93) 《}日省錄》, 고종 19년 6월 10·11일.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 6월 26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金正起, 앞의 글, 482쪽.

⁹⁴⁾ 일본과 청국이 군대를 파견한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아래와 같은 상세한 연구가 나와 있다.

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の研究》 상(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 申國柱,《近代朝鮮外交史》(探求堂, 1965).

權錫奉、《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一潮閣, 1986).

였다.95)

전보를 받은 외무경 이노우에(井上馨)는 16일 긴급내각회의를 소집하였다. 각의에서는 밤늦게까지 대책이 논의되었지만, 즉시 개전을 주장하는 강경론과 교섭에 의한 처리를 우선하자는 온건론이 맞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17일 아침부터 계속된 회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천황은 외무대신의 온건론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전권위원으로 하나부사공사를 파견하되 군대가 호위하고, 외무경이 시모노세키(下陽)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세부사항을 판단 결정하고 부산과 원산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즉각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일본각의의 결정은 육해군의 무력시위를 배경으로 삼아 조선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 내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각의는 외교담판은 공사에게, 군사상의 일은 군지휘관에게 맡겨 함께 파견하고, 총지휘를 외무경이 맡도록 결정하였다.96)

이노우에의 지시에 따라 외무성 서기관 곤도(近藤眞鋤)가 먼저 군함 2척에 해병대 150명과 함께 선발대로 6월 22일 제물포로 파견되었다. 그 뒤 24일 직접 시모노세키로 온 이노우에가 하나부사와 면담한 다음, 앞으로의 협상 및 행동지침과 함께 출발명령을 내렸다.97) 하나부사공사의 지휘로 군함 4척.

⁹⁵⁾ 金正明 編,《日韓外交資料集成》2, 電信:京城暴動事變情報ノ件, 朝鮮國駐箚花 房辨理公使ヨリ井上外務卿宛, 93~94쪽.

田保橋潔, 위의 책, 788쪽.

⁹⁶⁾ 田保橋潔, 위의 책, 788~789苓. 李光麟,《韓國史講座》V 近代篇(一潮閣, 1981).

⁹⁷⁾ 이 때 내려진 명령은 다음과 같다. ① 朝鮮政府는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나라에 문서로 사죄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 ② 우리의 요구를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凶徒의 徒黨을 나포하여 우리 정부가 만족할 만한 엄중한 처분을 할 것, ③ 遭難者를 위하여 응분의 贍卹하도록 할 것, ④ 조약위반 및 출병준비에 따른 비용을 배상할 것, 배상액은 우리측 준비의 實費에 준할 것, ⑤ 장래의 보장으로 朝鮮政府는 향후 5년간 서울주재 日本公使館을 수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병력을 준비할 것, ⑥ 우리 商民을 위하여 安邊을 개항장으로 할 것 등 6개 항목이었으며, 이 밖에 협상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다음 3개의 요구를 추가하고 있었다. ⑦ 만일 조선정부가 중대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있으면, 巨濟島나 松島(鬱陵島)를 日本에 양여하여 사죄의 뜻을 표할 것, ⑧ 만일 朝鮮政府의 요인 중에 폭도를 비호하는 자가 있으면

수송선 3척, 그리고 1개 대대병력 약 1,500명이 6월 29일 제물포로 들어왔다. 이 배에는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김옥균과 서광범이 동승하였다.

한편 청국은 조선에서 봉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6월 18일 주일공사관의 통지를 받고 알게 되었다. 일본 외무성의 연락을 받은 주일공사 黎庶昌은 사실과 함께 일본정부가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니 중국도 군함을 파견해 사태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전보로 건의하였다.98) 李鴻章이 모친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대리로 직책을 수행하던 署理北洋大臣兼直隸總督 張樹成은 곧바로 총리아문에 보고하는 한편, 天津海關道 周馥에게 명령을 내려 당시 천진에 머물고 있던 영선사 김윤식과 문의관 어윤중을 만나 사태를 알리고 조선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했다.

주복은 김윤식과 어윤중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봉기가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매우 놀라고 당황하였다. 그러나 사태를 파악하고는 하급 군병이 중심이 된 봉기의 배후에는 대원군이 있을 것이라고설명했으며,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국왕을 보호하고 난을 진압해 달라고요청하였다.99)

중국정부는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琉球를 점령했듯이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크게 긴장했다. 그러나 아직 대규모 군대의 파병을 쉽게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본측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먼저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양함대 제독 丁汝昌이 馬建忠과 함께 군함 3척을 이끌고 6월 22일 천진을 떠나 27일 제물포로 들어왔다. 이 때 어윤중은 이 부대와함께 돌아왔다.

정여창은 먼저 어윤중을 보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선발대로 와 있던 일본 외무성 서기관 곤도의 방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어

朝鮮政府는 곧 그 자를 면직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할 것, ⑨ 조선의 정세가 위중할 경우, 배상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臨機에 적절히 처리할 것.

⁹⁸⁾ 權錫奉, 앞의 책(1986), 190~191쪽.

田保橋潔, 앞의 책, 830~831쪽.

彭澤周、《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東京;塙書房, 1969), 186~187쪽.

⁹⁹⁾ 權錫奉, 위의 책, 6장 大院君의 被囚.

요중은 대원군이 주모자이며 하루빨리 난을 진압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주모자를 체포해야 한다 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마건충 역시 정세를 관찰한 결과 사태가 생각보다 심 각하므로 청국이 우세한 병력을 동원하여 주모자를 체포하고 반란세력을 진 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태를 파악한 정여창은 곧바로 천진으로 돌아왔다.100)

선발대를 파견한 직후 청국정부는 파병원칙을 결정해 이미 24일 황제의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25일 주일공사로부터 '왕비와 대신 13명이 살해당했고, 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자, 육군을 파견하기로 하고 廣東水師提督 吳長慶을 책임자로 임명해 淮軍 6營을 거느리고 출동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때 중국정부는 난의 진압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원군을 체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7월 4일 출발한 오장경이 지휘하는 3,000명의 군대는 7일 제물포에 정박중이던 일본군을 피해 남양만 마산포에 도착하였다. 김윤식은 청국군의 향도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이 부대와 함께 들어왔다. 그는 어윤중과 공동으로 국왕에게 그 동안의 경과를 장계로 보고하였다.¹⁰¹⁾ 오장경은 대기중이던 마건충으로부터 그 동안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나부사공사는 인천에 머물면서 그 곳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시체를 수습하면서 이미 도착해 있던 청군의 마건충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7월 2일 그는 1개 중대의 호위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와 泥峴에 진을 친 뒤, 후속부대의 도착을 기다려 7일 수행원과 함께 창덕궁으로 들어가 고종 앞에 일본측의 요구를 적은 책자를 제시하였다. 일본측의 요구는 주모자 처벌, 피해보상, 개항 및 통상의 확대, 병력주둔을 비롯한 8개 조항이었다.102) 그는 회답 기

¹⁰⁰⁾ 申基碩、〈清韓從屬關係-壬午軍亂을 前後한-〉(《亞細亞研究》2-1, 1959), 20~21等.

¹⁰¹⁾ 魚允中,《從政年表》권 3, 고종 19년 7월 초8일, 137쪽.

李光麟, 앞의 책, 150~152쪽.

¹⁰²⁾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 7월 초8일조에 보면 8개항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一. 今十五日內 捕獲凶徒巨魁及其黨與 從重懲辦事.

二. 渠漢遭害者 優禮瘞葬 以厚其終事.

三. 撥支五萬圓 給與遺族並受傷者 以加禮卹事.

일을 3일로 정하고 회답에 따라 국교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단절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태도는 무력을 배경으로하는 동시에 조선정부에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압박함으로써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측 요구내용이 알려지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반일감정이 고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중요 대신들이 격분하였고 일본과 무력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대두되었다. 대원군은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일본 측의 요구가 적힌 책자를 되돌려 보내고 무력으로 대항할 강경방침을 세워 군대동원에 착수하면서 마산포에 상륙중인 청국군에게 일본군을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단 제물포로 돌아가 무력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¹⁰³⁾ 원래 그들의 지시사항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수할 때는 일단 무력으로 제물포를 점령한 다음 외무경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청군이 함께 파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력점령이 자칫 심각한 충돌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부사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함선으로 돌아가 있게 되었다.

청군은 10일과 12일 오장경·정여창 등이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왔다. 일본군에 이어 청군이 서울로 들어오면서 서울 도성 안에는 청군이 들어와 도성을 모두 함몰시킨다는 소문이 퍼졌고, 많은 도성민들이 크게 혼란에 빠져 사대부가는 물론 일반 하층민까지도 가족을 이끌고 성을 빠져 나가 피란하고 있었고, 군병들은 청군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104)

서울에 들어온 청군은 대원군정권과 일본측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7월 13일 진압의 1단계 조치를 취했다. 대원군을 청국으

四. 凡因凶徒暴舉 日本國所受損害及準備出兵等 一切需費 照數賠償事.

五. 擴元山釜山仁川各港間里程 爲方百里朝鮮里法 新以楊花鎭爲開市場 咸興大邱等處爲往來通商事.

六. 任聽日本國公使領事官及隨員眷從等 遊歷門地各處事.

七. 自今五年間 置日本陸軍兵一大隊八百名 以護衛日本公使館事.

八. 但設置修繕兵營 朝鮮政府任之事.

¹⁰³⁾ 田保橋潔, 앞의 책, 808~811쪽.

¹⁰⁴⁾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 7월 초2일.

로 납치해 간 것이다.105) 군병들을 포함한 도시 하층민들의 기반 위에 세워 진 대원군정권은 아직 뚜렷한 체계를 잡지 못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대원군의 납치는 대원군정권의 사실상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원군 납치를 성공시킨 청국은 2단계 조치로 밤 사이에 궁궐 안팎은 물론 사대문을 수비하던 조선의 군병들을 몰아내고 서울 시내의 치안을 장악하였다.106) 주한청국대표 원세개는 일단의 청군을 이끌고 궁궐을 장악하였고, 오장경은 3,000여 명의 청군을 서울 각처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아침 대원군 납치사건을 합리화시키면서 민중의 소요를 엄금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107)

임오군란을 일으켜 일단 성공시켰고 자신들의 요구가 정치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기대하며 지켜 보던 군병을 포함한 도시 하층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군에 의한 대원군의 납치는 자신들의 요구가 청군에 의해 좌절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서울의 하층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군병들은 곧 무기를 들고 곳곳에서 청군과 충돌하여 소규모 전투를 전개하였다. 도시 하층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청군이 한때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청군은 포고문을 다시 발표하면서 탄압을 강화하였다. 군병을 중심으로 전개된 하층민저항은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결국 우세한 화력을 보유한 청군에 의해서 거의 진압되고 말았다.108)

청군은 대원군정권과 정권성립의 기반이 된 도시 하층민세력의 저항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한 다음, 이들은 좀더 철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청군은 조선군의 책임자이며 대원군 추종장자인 이재면을 남별궁에 억류하고, 이경하·신정희를 비롯한 대원군 추종세력을 체포, 투옥함으로써 대원군정권을 붕괴시켰다.109)

¹⁰⁵⁾ 黄 玹, 《梅泉野錄》, 임오 7월 13일.

金允植,《陰晴史》하, 고종 19년 7월 10일.

대원군 납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權錫奉, 앞의 책에서 검토하고 있다.

¹⁰⁶⁾ 鄭 喬. 《大韓季年史》. 고종 19년 7월 17일.

¹⁰⁷⁾ 宋近洙,《龍湖閒錄》, 23 47 28 14 29 清將曉諭文・清兵所付榜文(國史編纂委員會編, 1980, 458~459 48).

¹⁰⁸⁾ 申國柱, 앞의 책, 148~152쪽.

¹⁰⁹⁾ 金允植,《陰晴史》하, 189~190쪽.

청군은 7월 15일과 16일「임오군란」의 진원지이며 군병들의 집단거주지인 왕십리와 이태원을 공격하였다. 청군은 국왕 고종이 亂黨을 진압해 달라고 청군에게 요청하는 글과 왕십리 일대 주민에게 알리는 고시문을 김윤식을 거쳐 받아 내어 무력진압을 합리화시켰다. 왕십리지역은 張光前・吳兆有・何乘驚 등이 이끄는 부대가, 이태원지역은 오장경이 이끄는 부대가 각각 포위 공격하였다. 하급 군병들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주민들은 투석과 방포로 용감히 대항해 싸웠으나 결국 많은 희생자를 내고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로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체포된 자가 왕십리지역 150여명, 이태원지역 20여 명으로 모두 170여명에 이르렀다.1100 체포된 군병들은모두 형조와 좌우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았고 그 가운데 11명은 7월 23일 斬首刑을 받았다. 주동자 김장손・유춘만 등 8명은 청군이 습격하기 전에 도망했었지만 나중에 체포되어 8월 24일 역시 참수형을 받았다.1110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대원군정권과 민중저항세력은 모두 청군에 의해 진 압당하고 말았다. 도시 하층민의 요구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는 좌절되고 만 것이다.

청군이 치안을 장악한 가운데 정권은 다시 민씨 척족세력에게로 돌아갔고, 사태가 완전히 진압된 이후인 7월 25일 국왕은 민비가 살아 있음을 공식 발표하는 동시에 국상을 치르기 위해 설치했던 도감을 폐지하였다. 이어 영의정 이하 대관들이 長湖院으로 내려갔고, 오장경은 청군 100명을 내려보내 호위하도록 함으로써 민비는 8월 1일 청군의 호위 속에 서울로 돌아왔다.

¹¹⁰⁾ 필자미상, 《日記》,임오 7월 16일.

金允植,《陰晴史》하, 고종 19년 7월 10일.

金衡圭, 《靑又日錄》, 임오 7월 16일.

鄭 喬. 《大韓季年史》. 고종 19년 8월.

黃 玹, 《梅泉野錄》, 고종 18년 7월.

^{111)〈}長孫等鞫案〉.

李光麟, 앞의 책, 153쪽.

3) 임오군란의 영향

(1) 일본의 국내 사정과 대조선정책의 변화

일본은 「임오군란」의 직접적인 공격목표였다. 일본정부는 1876년 무력을 바탕으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고 통상을 통해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후발 자본주의국가로 서구열강과의 대외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던 일본에게 조선시장은 매우 큰 비중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 안에서는 征韓論이 대중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전파되고 있었으며, 특히 언론은 그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 일본공사관이 피습을 당하고 상당수의 공관원과 군인이 피살 당했다는 소식은 일본 국내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일본 국내 각신문사는 곧 호외를 발간하고 전 국민을 긴장 속에 몰아넣는 선동적 기사를 연일 싣기 시작했다. 각 보도기관들은 저마다 외무성을 비롯하여 주요 관청, 군부, 그리고 시모노세키와 나가사키까지 특파원을 보내 대부분 약간의 사실에 많은 추측이 담긴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곧 전쟁이 일어날 듯이 여론을 자극하였다. 그러자 흥분해 종군을 지원하는 자가 속출하였고 군사비에 충당하라고 헌금을 하는 자들은 물론 무력으로 대원군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특히「玄洋社」을 중심으로 한 정한론자들은 의용병을 조직하는 한편 개전 주장을 활발히 펴나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기업자들이 나서 물품을 매점하는 소동을 일으켜 요코하마(橫濱)의 은화시장과 洋鐵시장, 그리고 일반 소비물자의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면서불과 며칠 사이에 사회 전반이 준전시상태 같은 분위기로 빠져 들어갔다.112)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의 정치적 불만을 대외문제에 쏠리게 함으로써 적절히 언론을 이용하였다. 당시 일본은 자유민권운동이 전성기를

함으로써 적절히 언론을 이용하였다. 당시 일본은 자유민권운동이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1881년 정변으로 민권론자들을 추방하고 천황제 군 국주의를 지향하는 伊藤博文 등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자유민권운동

¹¹²⁾ 白鍾基,《近代韓日交涉史研究》(正音社, 1977), 199~201\.

탄압에 고심하던 일본정부는 이 사건을 이용해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향하게 한 것이다.113) 정부는 어용지를 동원해서「임오군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 으며 아울러 매우 선동적인 그림을 담은 팜플렛과 채색화 등을 유포시켜 여론의 방향을 마치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로 몰고 갔다.114)

하나부사공사를 파견하면서 일본정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우선 이노우에의 훈령 가운데 "육해군을 파견하는 것은 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절과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폭도와 부딪칠 경우에도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개전이 불가피하다면 즉시 본국정부에 알려 명령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조선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단 제물포로 돌아와 개항장을 점거해 거류민을 보호하면서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경주재 각국 공사에게 일본정부는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조선정부를 문책하기로 했다는 통지를 보내어 침략이 아님을양해시키려 했고, 주청공사를 통해 청국정부에게 일본군파견 목적을 설명해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물론 만약의 개전사태에 대비해 동경에 있던 병력 일부를 후쿠오카(福岡)에 파견해 그 곳의 병력과 합쳐 혼성여단을 편성한 후 명령에 따라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준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조선정부를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되 즉각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노우에는 훈령을 내리면서 "일본상민을 위하여 安邊을 開港場으로할 것"과 "만일 朝鮮政府가 중대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있으면, 巨濟島나 松島(鬱陵島)를 日本에 양여하여 사죄의 뜻을 표할 것"이라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 뒤 하나부사공사가 조선정부에 요구한 내용 중에 "원산·부산·인천각 항구의 통상 허용범위를 사방 100리로 확대하고, 새로 양화진에 시장을 개설하여 서울을 개방하며, 함흥과 대구를 왕래하며 통상할 수 있도록 허용

¹¹³⁾ 旗田巍、〈明治期の日本と朝鮮〉(日本國際政治學會編、《日韓關係の展開》,有斐閣, 1963), 4쪽.

¹¹⁴⁾ 宮武外骨 編,《壬午鷄林事變(新聞雜誌所載錄)》(1932). 權錫奉, 앞의 글(1975), 417等.

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상을 확대하고 가능하다면 주요 섬을 점령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평소 일본 외무성이 조선정부에 요 구하고자 했던 것들이었다고 생각된다.

하나부사공사가 조선에 다시 들어와 요구사항을 제시했을 때만 해도 대원 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청군이 대원군을 납치하고 군란을 완전히 진압하면서 정권이 다시바뀌자 청군의 중재에 따라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왕은 李裕元을 전권대신, 김홍집을 전권부관으로 임명하여 인천 제물포에서 회담에 임하도록 했다. 일본공사는 일본측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인 수정 후에 거의 그대로 관철시켰고, 조선측 대표들은 협박조에 가까운 무력외교에 굴복하여 약간의 수정안만 관철시켰을 뿐 대부분 일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7월 17일〈朝日善後條約〉(일명 濟物浦條約)을 맺었다.115)

그 내용은 조선정부가 주동자들을 체포해 처벌하고, 피살된 일본인의 장례를 치른 뒤 이들의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측 손해배상비와 파병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이며, 일본공사관을 경비할 군대주둔을 허용과 아울러 특사를 파견해 공식적으로 사죄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20일 이내에 주동자의 체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일본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삼아 일본군대를 서울 도성 안에 주둔시키겠다고 한 것은 조선의 군대와 경찰을 전적으로 무시·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손해배상비 50만 원은 당시 조선의 국가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요구였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같은 날 〈朝日修好條約〉(일명 江華島條約)의 續約 2개 조항에 동의한 것이었다.¹¹⁶⁾ 이 속약은 강화도조약체결 이후 통상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여러 차례 일본정부가 조선정부에게 요청한 바 있었으며 그 때마다 거절당해 실현하지 못하던 것이었다. 이처럼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일본은 혼란을 이용해 반

¹¹⁵⁾ 金正明 編, 위의 책(2권), 225~227쪽.

¹¹⁶⁾ 金正明 編, 위의 책(2권), 232쪽.

강제로 얻어낸 것이다. 청국군대가 군란을 진압했고 그들의 힘에 업혀 정권을 되찾은 상황에서, 중재를 하던 청국측 마건충이 화해를 종용했기 때문에 조선측 대표들은 앞뒤 상황을 충분히 따지고 버틸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충분한 협상을 포기하고 조선측 대표들은 일본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 것이다.

조약체결에 성공한 하나부사공사는 다시 이노우에의 추가훈령에 따라 대원군이 전국 곳곳에 건립한 반외세정책의 상징인 斥和碑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 쇄국정책과 유생세력의 위정척사운동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버리겠다는 의도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이 요구에따라 전국의 척화비를 철거하였다. 한편 7월 21일 제물포에서 호리모토(掘本禮造)를 비롯한 13명의 일본인피살자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조선정부는 예조 좌랑이 예물을 갖고 참석하게 했다. 또한 일본측이 청국군의 진압 때 체포, 처형당한 자들이 진범이 아니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포도청에 명령하여 7월 말까지 9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하였다. 일본측은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여 죄인들의 사형집행을 일본 군 1개 소대가 참석하여 지켜보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조약체결과 사후 처리를 대부분 일본측이 요구하는 대로 시행한 다음 하나부사공사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가 타고 간 선박에 조선측 謝過使로 파견된 전권대신 박영효와 그 일행이 동승하였다. 박영효는 일왕 명치에게 조선국왕의 사죄내용을 담은 국서를 제출하고 외무경 이노우에에게 예조판서의 사과문서를 전달하였다.

이상 간략히 검토한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는 일본각의에서 결정한 방향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정부와의 협상이 성공을 거두어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통상과 관련된 요구들을 관철시키면서 동시에 군대주둔권까지 얻게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청국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변수가 놓여 있었다. 일본정부가 즉각 개전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청국을 포함한 국제관계가 악화되면, 조선뿐만 아니라 청국과의 전쟁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러기에는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었다. 게다가 청국은 군대를 조선에 그대로 주둔시키고 있었고, 조선

정부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청국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청 국과 맞서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의 확보가 절실해졌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군비확장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미 1878년에 설치되어 청국과 맞서 싸울 방안을 연구하던 일본 육군참모본부는 「임오군란」의 발생 직후인 7월 2일(양력 8월 15일) 청국을 가상적으로 하는 군비확장안을 제출하였고 정부는 이를 채택하였다. 일본 해군도 이에 발맞추어 9월 초 이와쿠라(岩倉)우대신이 각의에서 청국을 가상적으로 한 해군확장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고, 해군성이 건의한 새로운 군함건조계획이 제출되어 11월 15일 각의에서 의결되었다. 명치도 12월 24일 지방관회의를 궁중에서 소집하여 군비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조세부담을 늘릴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앞서 22일에는 각의가 군비확장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면서 군인의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軍人勅諭論〉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 뒤 일본정부는 청국과의 전쟁을 예상하면서 계속해서 군비확장에 나섰는데, 육군은 1884년부터 1894년까지 약 10년 동안 보병 12개 여단, 기병과 포병 각 6개 연대, 工兵・輜重兵 각 6개 대대를 정비하게 되었고, 해군은 1882년 26척이었던 군함을 1893년까지 32척으로 늘리면서 정비하였다.117)

이와 같은 임오군란 이후 일본의 급속한 군비확장이 단순한 군비의 문제 만이 아니라, 근대적인 군대형성의 시발점으로 파악할 때 그 시작은 1882년 이 된다.¹¹⁸⁾ 그리고 1880년대 내내 지속된 군비확장은 정치적으로는 임오군 란 당시 청국 해군의 출동에 대한 위기감이 원인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생 사무역을 중심으로 한 당시 세계경제를 유리하게 활용해 그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¹¹⁹⁾

¹¹⁷⁾ 白鍾基. 앞의 책. 204쪽.

¹¹⁸⁾ 藤間生大, 〈「壬午軍亂」と日本近代軍の確立〉(《海外事情研究》24, 熊本商科大學, 1985)

¹¹⁹⁾ 藤間生大,〈日本近代軍成立の經濟構造-「壬午軍亂」を媒介とし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22, 1985).

(2) 청의 대조선정책의 변화와 영향력 확대

청국은 오랫동안 중화체제의 종주국으로서 전통적인 사대관계 속에서 조선과 관계를 맺어 왔다. 하지만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하던 청의 대조선정책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임오군란」이전까지 청국의 대조선정책은 서구열강과의 조약체결과 내정 강화를 조선정부에 권유하는 외교수단에 주로 의지하고 있었다. 이홍장이 채 택한 외교수단은 일차적으로 조선정부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것이었다. 이홍장은 조선의 영중추부사 이유원과의 개인적인 서신 교환을 통해 청국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1876년 조선의 개항에 이어 1879년 러시아와의 伊犁교환 교섭과 일본의유구병합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들은 모두 러시아와 일본의 팽창 야욕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청국으로서는 이 사건들을 계기로 중화체제의 종주국으로서의 대외적 위신실추와 함께 이들 국가들로부터 심각한정치·군사적 위협을 느꼈으며, 동시에 조선이 차지하는 정치군사적 비중을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이홍장은 1878년까지는 서구열강과 조약을 맺으라고권유했었다. 그러나 1879년을 계기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관계를 맺으라고 권유하던 것을 일본과 러시아를 모두 반대하고 대신 서양열강들과관계를 맺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조선내정에 대한 개입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홍장은 조선정부에게 군비강화, 일본과의 수호조약 준수, 그리고 구미열강과의 수교를 통한 개국을 강력하게 권유하였다.1200 이러한 권유에 따라 조선이 미국·영국·독일 등과 계속해서 수교조약을 맺어 나갔으며 통상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터진「임오군란」은 청국에게는 한편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 대단히 중요한 기회였다. 청국은 군란이 일어났고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다는

¹²⁰⁾ 權錫奉, 〈大院君의 被囚〉(앞의 책, 1986), 82~104쪽.

박명규, 〈19세기 후반 동북아시아의 外壓 구조 : 한국과 일본의 비교〉(《東北亞 秩序의 形成과 變動》(韓國政治外交史學會, 1994), 33~34쪽.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아주 신속하게 대응했다. 정여창·마건충의 선발대가출발한 것은 처음 소식이 전달된 18일부터 불과 5일 뒤인 22일이었으며, 24일에는 파병에 대해 황제의 재가를 받았고, 7월 4일 오장경이 3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출발했다. 일본군보다 훨씬 우세한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온청국군은 신속하게 대원군을 납치하고, 궁성 일대를 장악하고 하급 군병들과전투를 벌여 진압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 성공을 거두었다. 청군은군란이 진압된 다음 청국측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선정부를 재구성하도록 영향을 끼쳤으며 민비가 서울로 환궁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호위했다.

청국은「임오군란」의 진압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내용은 종주권강화와 통상확대였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우선〈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로 나타났다.[21]) 물론 조선과 중국의 육로를 통한 무역은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 무역은 양국 관리들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밑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역물품과 시기, 그리고 대상자까지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밀무역이 성행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한편 조선의 개항 이후 청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정치적・경제적 선취권을 빼앗긴 데 대한 반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자는 요구가 청국정부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조선정부 역시 새로운 통상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일본 과의 무역에서 일본상품에 관세도 부과하지 못했고, 일본상인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이들의 독점활동을 견제하고 싶었으며, 러시아의 침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육로통상 방식도 전면 재검토해야 했다. 그래서 1881년 1월 조선정부는 청국에 관리를 파견해 통상에 관한 협상을 제의함으로써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청국정부로서는 이 협상을 통해 열세에 놓여 있던 조선 안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이권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아 속방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가운데 갑자기 「임오군란」이 발생했던 것이다.

^{121)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의 상세한 내용은 金鍾圓,〈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에 대하여〉(《歷史學報》32, 歷史學會, 1966)를 참고할 수 있다.

군란진압 후 다시 열린 협상에서 청국의 입장은 매우 위압적으로 바뀐 상태였다. 군대를 출동시켜 준 것을 중국정부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9월 천진에 파견된 진주사 조영하와 부사 김홍집, 그리고 문의관 어윤중이 협상대표가 되었는데, 이들은 조선측에 유리한 주장을 갖고 협상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 초안이 잡혀 있던 전문 8개조의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을 세부사항도 채 충분히 검토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측 대표 마건충과 주복의 강압과 권유에 따라 조인하고 말았다. 이 조약을 통해서청국은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던 국제법상의 종주권을 명문화했다. '오직 이번에 체결하는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 다르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내에서의 청국 商務委員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양화진뿐만 아니라 서울 도성 안에서의 淸商의 상업활동을 허용받음으로써 각종 특혜 위에서 경제활동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122)

곧 이어 청국은 1883년 3월 다시 전문 24개조로 된〈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을 추가로 제시하고 조선측에 조인을 강요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앞선무역장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육상교역 부분을 보완하는 것인데, 그 내용가운데에는 조선이 청국을 '天朝' 또는 '上國'이라고 불러야 하며, 그 동안 사용하던 '東國'이라는 용어가 中國의 '中'에 대해 '東'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평등하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종속관계를 보다명확이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123) 대원군 납치가 행동으로 조선의 자주성을 부인하고 실질적인 종주권행사로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었다면, 일련의 장정체결은 종주권의 법적 명문화였다.124)

이 시기 중국정부는 종주국으로서의 위신을 세우려고 조선정치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오장경의 幕士였던 張謇과 翰林院 侍講 張佩綸의 상주문이 당시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장건은〈朝鮮善後六策〉이라는 글을 썼

¹²²⁾ 金鍾圓, 위의 글.

O. N. Denny, 《清韓論》(柳永博 譯註, 東方圖書, 1989), 32\.

¹²³⁾ 白鍾基, 앞의 책, 166쪽.

¹²⁴⁾ 金正起, 앞의 글, 494쪽.

는데, 종주권강화를 위해 漢四郡설치의 예에 따라 조선의 국왕을 폐하고 조선을 중국의 한 省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장패륜도〈朝鮮善後事宜六策〉이라는 글을 통해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하고 駐箚韓國通商大臣이라는 직책의 대신을 파견하여 조선의 외교와 군사 등의 실권을 장악하고, 또 제물포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 50만 원을 대신 부담하여 일본의 조선간섭을 막자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상주문이 바쳐지자 중국황제는 이홍장에게 검토시켰다. 이홍장은 너무 노골적이고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나중에는 그 주장에 동조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다음 한국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125)

한편 이홍장은 조선정부의 외교업무에 간섭하려는 의도에서 외교고문을 두도록 요구하여 청국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임명하게 했다. 맨처음 외교고문으로 임명된 자는 독일인 묄렌도로프(Paul G. von Möllendorff, 穆麟德)와 馬建常이었고, 다음이 데니였다. 하지만 이 두 외국인은 청국의 의도대로 활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비난하기까지 했다.126) 그리하여이홍장은 그 후임으로 袁世凱를 파견하였다. 그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청국의속방으로서 조선외교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3) 국내 상황의 변화

「임오군란」이후 대원군세력은 철저하게 제거되었다. 정부요직은 민씨 척족세력이 대부분 장악하였으며, 일부 개화파세력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정부는 임오군란 이전의 정책방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며 개혁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청국의 입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청국의 권고와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조선정부는 관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군란 뒤 대원군이 복설했던 삼군 부를 폐지하고 한동안 통리기무아문을 계승한 機務處가 설치되어 임시로 국 정을 처리했는데, 집행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종래의 통리기무아

¹²⁵⁾ 田保橋潔, 앞의 책, 861~867쪽.

李光麟、〈馬建忠과 韓・中關係〉(《開化期研究》一潮閣, 1994), 99至.

¹²⁶⁾ 柳永博, 〈清韓論 解題〉(O. N. Denny 著, 《清韓論》), 65\.

문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 결과 고문으로 들어온 마건상과 묄렌도로프의 자문을 받아 11월 17일 統理衙門 및 統理內務衙門을 설치하였고, 12월 4일에는 통리아문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줄여서外衙門이라 하였다)으로 명칭을 바꾸어 외교통상관계 사무를 담당하게 했으며 그 밑에 4개의 司라는 하위기관을 두었다. 그리고 통리내무아문을 統理軍國事務衙門(줄여서 內衙門이라 하였다)으로 명칭을 바꾸어 군대에 관한 일을 포함한 모든 내정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7개의 '사'를 두었다.

군국아문과 교섭아문은 기본적으로 통리기무아문을 계승한 것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적인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교섭아문을 설치해 외교통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시키고, 교섭아문보다 격이 높은 군국아문이 내정 및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교섭아문을 통제함으로써 짜임새가 갖추어진 것이다. 이후 교섭아문은 1894년 갑오개혁까지 계속 역할을 수행했지만 군국아문은 갑신정변을 계기로 폐지되었다.127)

군제도 개편되었는데 전적으로 청국군 주도로 진행되었다. 다시 복설되었던 훈련도감을 폐지하면서 먼저 9월 19일에 군병 500명씩의 2개 부대로 편성한 親軍을 새로 창설하였다. 두 부대는 각각 친군 좌영과 우영으로 분리되었으며 청국식 군사훈련을 받았다. 한편 박영효는 1883년 3월 광주유수로 임명되자 수백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신식 군대를 일본식 훈련으로 양성하였고, 윤웅렬 역시 남병사로 임명되어 北靑에서 모집해 온 군병에게 일본식 군사훈련을 시켰다. 박영효가 양성한 병력은 그가 광주유수에서 물러난 후 어영대장 한규직이 감독을 맡으면서 친군 전영이 되었고 남병영 군대를 합류시켰다. 이어 친군 후영까지 창설하여 4영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1884년 8월 29일에는 궁궐경비를 담당하던 용호영ㆍ금위영ㆍ어영청ㆍ총융청을 해체해그 병력을 친군 4영에 분산 배치하였다.128)

이처럼 군사제도는 친군 4영체제로 정비되었지만 훈련방식과 간부의 정치

¹²⁷⁾ 김필동, 〈한국 근대 관료의 초기 형성 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 1881~1894〉 (《한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50, 문학과지성사, 1996, 182쪽).

¹²⁸⁾ 박은숙, 앞의 글, 214~215쪽.

적 성향이 청국지향적이던 좌우영과 일본지향적이었던 전후영 군병들 사이에는 심각할 정도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 이 대립된 입장은 갑신정변 때그대로 나타나 친군 좌우영군은 청군에 가담해 개화당정권을 진압하였고, 친군 전후영군은 정변에 동참하여 개화파의 명령을 받는 비극을 불러왔다.[29)

개항장이 늘어나고 서울 장안까지 일본상인과 청국상인들이 몰려들면서 조선상인들과의 심각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서울시장이 개방된 것은 우선 새로 체결된 조일수호조약속약 때문이었다. 첫째 인천 등 개항장 부두를 기점으로 100리(약 40km)까지 일본인이 진출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양화진이 열리면서 서울침투가 가능해진 것이다. 청나라 역시〈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서울에 청국상인이 상점·창고·여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이권을 삽입했으며, 이를 본 영국 역시 영국인의 서울 상점개설권을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삽입해 버렸다(1883년 11월 26일). 이러한 모형으로 1902년까지 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벨기에·덴마크가 그들도 조약에 이 같은 이권을 넣었고, 미국과 일본은 최혜국조관에 따라영국의 서울 상점개설권을 균점받게 된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청국상인의 진출이 두드러져 군란 1년 뒤인 1883년에는 인천·부산·원산 등 개항장의 상인 수가 99명으로, 다시 1년 뒤인 1884년에는 3.5배가 늘어난 353명에 이르렀다. 그 뒤에도 해마다 청국상인의 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점포개설도 크게 늘어갔다 130)

4) 임오군란의 구조와 성격

임오군란은 한국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된 도시 하층민의 항쟁이었으며 이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정권이 바뀌는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동시에 임오군란은 당시 조선이 처한 국제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정치사적으로 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여기서는 먼저 참가층의 구성과 동원조직, 운동을

¹²⁹⁾ 박은숙, 위의 글, 215~217쪽.

¹³⁰⁾ 譚永盛, 〈朝鮮末期의 淸國商人에 關한 硏究-1882년부터 1885년까지-〉(단국 대 석사학위논문, 1976).

통해 드러난 민중의 요구, 정부 및 지배층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정치사적 의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참가층의 구성과 동원조직

「임오군란」에는 도시 하층민들이 폭넓게 참가했으며, 그 중심은 하급 군병이었다. 운동참가자의 구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분 또는 직업을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점을 보여줄 자료가부족하다. 다만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받은 사람들의 심문기록과 재판기록의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推案及鞫案》5책과《左右捕盜廳謄錄》1책이 그것이다. 조사받은 자들은 각각 33명과 27명인데, 양쪽 자료에 겹치는 16명을 빼면 44명의 기록이 남아 있는 셈이다. 여기서는 이 기록을 이용하여 도표를만들어 보았다.

먼저 〈표 1〉을 보면 군병은 모두 29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군병의 80%인 24명이 훈련도감 소속이며 용호영 소속이 1명인데, 이들은 모두 급료병 즉 고용병으로 서울에 상주하는 상비군이다. 총융청 별부료군관이외의 어영군과 총융청 아병은 번상병이며, '마병수역'도 정확하게는 알 수없지만 번상군으로 생각된다. 훈련도감 군병 가운데 하급 간부이며 운동의지도자였던 자들은 '대총'・'별기대'・'취고수' 등의 직책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병들 가운데 군병으로 복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심문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李永植은 경기도양주에 살다가 왕십리로 옮겨 살면서 훈련도감 취고수가 되었고, 동시에 포목상을 하고 있었는데 영동지방에 장사차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동별영에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곧 참여하고 있다.[31] 文昌甲은 훈련도감 牢子 宮旗手로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한편 마을에서 중임(또는 행수)을 담당하였다. 그는 무·배추 등의 채소농사를 했는데, 그가 거주하는 왕십리 일대에서 채소중심의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그는 바로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인 것이다.[32] 또한 洪千石은 훈련도

^{131)〈}春永永植鞫案〉罪人李永植案.

^{132)〈}長孫等鞫案〉罪人文昌甲案.

〈표 1〉 참가 군병의 성분

군 영	직 책	인	원
訓鍊都監	善騎隊	5	23
	別騎隊	1	
	哨 軍	3	
	旗 手	2	
	吹鼓手	7	
	塘報手	1	
	別破陣隊摠	1	
	左司牌頭	1	
	알 수 없음	2	
龍虎營	槍 手	1	1
御營廳	哨 軍	1	1
摠戎廳	別付料軍官	1	2
	牙 兵	1	
馬兵受役		2	2
합 계		29	

감 군병으로 복무하다가 4년 전에 그만둔 자인데 그만두기 전부터 왕십리에 거주하면서 '雇賃農業'을 하며 살아가는 임노동자였다. 133) 그 밖의 경우는 심 문과정에서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른 군병들도 상업·수공업·농업 등의 각종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살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하급 군병들이 대부분 사대문밖 교외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점이다. 〈표 2〉에서 보듯이 군병들은 왕십리·이포리·안암동 등의 동부 교외지역과 청파·냉동 등 서부 교외지역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다른 도시 하층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특히 왕십리지역에는 군병들이 집단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참가자의 지역적 밀집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왕십리지역에서 향촌조직과 군대조직의 결합에 의한 동원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133)《}左右捕廳謄錄》 권 1, 罪人洪千石供案.

〈표 2〉 군병의 거주지역

(표 3) 일반 하층민 직업

거	주 지	인 원	직 업	인 원
東郊	往十里	19	商 人	3
	安巖洞	1	農業 兼 商人	1
	鍾巖洞	1	農業雇傭勞動	1
	踏十里	1	農 民	1
	灩尾亭洞	1	手工業者	2
	尼浦洞	2	使 喚	1
	馬場洞	1	無 職	1
西郊	靑 坡	1	기 타	4
	冷洞	2	합 계	14
द	<u></u> 합 계	29		

군병이 아닌 일반 하층민들의 성분은 〈표 3〉에서 볼 수 있다. 상인은 모두 4명인데 3명은 술장수(賣酒爲業)·떡장수(賣餠爲業)·국수장수(賣麴爲業)를 하는 소상인으로, 길거리에 좌판을 벌여 놓고 파는 坐商이거나 돌아다니며 파는 行商이다.134) '농민 겸 상인' 1명은 왕십리 거주자임을 고려한다면 채소를 비롯한 상품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농작물을 직접 팔러 다니는 소상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135) 수공업자는 2명으로 모두 冶業에 종사하는 대장장이이다. 농업종사자는 3명인데 왕십리의 농업임노동자와 인천지방의 농민 1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별기군교련소에서 사환일을 맡아 보던 敎練所兒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랑자가 각각 1명씩 있다. 기타로 처리된 자 중 鄭景石은 훈련도감 선기대 군병으로 있다가 1874년 무과에 급제하면서 그만둔 자인데, 종루 假家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상업종사자로 여겨지며,136) 許煜은 대원군의 심복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여 식객으로 있던 유생으로 생각된다.137)

^{134)《}左右捕廳謄錄》 권 1, 임오 7월 23일 罪人孫順吉供案・罪人孔致元供案 및 24 일 罪人趙應順供案.

^{135) 〈}弘根等鞫案〉罪人金興燁案.

^{136) 〈}弘根等鞫案〉, 罪人鄭景石案.

^{137) 《}左右捕廳謄錄》 권 1. 계미 5월 20일 罪人許煜供案.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운동에 참가한 세력은 왕십리를 비롯한 사대문밖 교외지역에 거주하던 하급 군병·영세수공업자·소상인·고용노동자·사환·부랑자 등 여러 유형의 도시 하층민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다른 하층민과 마찬가지로 교외지역에 거주하며 수공업·상업 등 다른 직업에도 종사하던 하급 군병이었다.

동원과정에서는 기존 사회조직과 연결망이 하층민의 결집과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전의 운동들이 어느 한 가지 조직에 의해 하층민을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임오군란에는 향촌조직과 군병조직의 두 가지 유형의 조직이 동시에 작용했는데, 이 두 조직의 결합은 하층민을 보다 많이 재빨리 동원하면서 운동이 보다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되었다.

기존 조직의 연결망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의 지도자가 동원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 역시 매우 중요했다. 사대문밖 동교와 서교지역의 하층민 촌락조직의 지도자인 중임(또는 임장·행수)들과 훈련도감의 하급 간부들이 각각 기존 조직내에서 이미 지니고 있던 영향력을 이용하여 동원계획과 준비를 진행시켰다. 이들은 통문을 돌려 연락을 취하는 한편, 잠재적인 불만을 지니고 있던 하층민들을 구체적인 문제로 집중시키고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그들이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운동을 이끌어 갔던 것이다.

향촌조직과 군병조직이 결합하여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양쪽의 조직지도자들이 함께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의 전개과정 전체에 걸쳐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두 조직과 지도자들이 함께 작용했지만, 확산단계로 들어서면서 운동의 중심은 군병조직으로 옮겨졌고, 군병조직의 하급 간부들이 주로 지휘를 담당하였다. 결국 운동이 좌절되는 단계까지이러한 양상이 계속되어 하급 군병조직을 중심체로 하여 다른 도시 하층민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군병들의 경우도 이들이 모두 하급 군병이었으므로 일관된 상하관계와 지휘체계에 의해 하나로 결합된 것은 아니었고, 영향력 있는 하급 간부들의 지휘에 따라 소규모 부대로 나뉘면서 분

[〈]煜等鞫案〉罪人許煜案.

산적으로 결합된 연합적 형태였다. 이것은 「임오군란」에 동원된 하층민들이 하나의 군병조직에 의해 통일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황변화 에 따른 전략적인 문제를 검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 지도력을 갖추지 못 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 공격 목표와 요구의 한계

「임오군란」의 전개과정에서 하층민들이 달성하려 했던 요구와 공격 목표는 단계적으로 바뀌면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초기단계의 요구는 等訴의 형태를 취했다. 비제도화된 통로이기는 했지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기존 사회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 등소를 통한 요구는 도봉소사건으로 잡혀간 군병들의 석방과 급료의 정상적 지급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자 하층민들은 곧 비폭력적 방식을 포기하고 무력행사에 돌입하게 된다. 일단 운동수단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하층민세력이 가장 먼저 공격했던 대상은 급료의 지급문제와직접 관련된 선혜청 책임자 민겸호와 김보현이었다. 이들은 부패한 관료의 상징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하층민들이 믿고 있던 인물이었다.

하층민들의 운동은 대원군의 명확한 목표 제시를 통해 자극 받아 점차 체제변혁의 차원으로 발전해 갔는데 이에 따라 공격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공격대상은 ① 이최응·민창식을 비롯한 민씨 척족세력의 관료 대신, ② 별기군 책임자 윤웅렬을 비롯한 개화파관료 및 이와 관련된 자, ③ 중인 부호, ④ 서울 근교의 사찰과 巫覡, 그리고 ⑤ 일본세력이었다. [138] 실제로 민씨 척족세력과 개화파, 중인 부호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지배층으로 군림하면서 일본세력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하층민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민씨 척족정권과 개화파 그리고

¹³⁸⁾ 필자미상, 《日記》, 임오 6월 11일,

鄭 喬. 《大韓季年史》. 고종 19년 7월.

朴周大,《羅巖隨錄》3책, 宣惠廳紛擾, 임오 6월 11일, 國史編纂委員會 編, 282쪽. 이 중 사찰과 무당은 민비가 국가재정을 남용하여 求福불공을 드리고, 무당들 을 궁궐로 불러들이던 일들과 관련하여 도시 하층민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와 연결되어 이익을 챙기며 일본을 끌어들이던 중인 부호세력을 제거하고 일본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다. 또한 이미 정당성을 잃고 있는 기 존 지배층과 외세를 제거한 바탕 위에 하층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 을 전개하리라 기대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임오군란」을 통해 표현된 도시 하층민들의 요구가 이처럼 봉건적 사회체제를 공격, 붕괴시키려는 측면을 강하게 지녔으면서도, 왕조 자체를 그리고 양반지배층을 전체적으로 이념의 차원에서까지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민씨 척족관료와 개화파관료들을 공격, 살해하고 궁궐에 들어가 이른바 국모인 민 비를 제거하려 했던 사실은 왕조 존숭의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일반적인 봉건관념으로는 국왕이 있는 궁궐에 침입한다거나 왕비를 살해 한다는 것은 왕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국왕을 해치려는 생각은 없었고 지배층에 대한 공격도 대원군세력을 비롯한 다른 양반관료계층은 공격하지 않은 선택적인 것이었다. 하층민들의 중세적 사회의식이 크게 약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극복단계는 아니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지도 못했다. 이는 도시 하층민들이 안고 있는 한계였다. 또한 도시 하층민세력을 지원하는 다른 사회세력이나 도시 하층민의 이익을 반영시켜 개혁이념을 제시하며 실현시킬 정치세력 역시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도시 하층민의 저항운동이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변혁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한계를 안고 있던 대원군정권에 의존하는 데 머물렀던 것이며, 새로운 근대적인이념과 개혁안을 제시하는 운동이기보다는 중세사회체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힘을 발휘했으며, 일시적이나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지만 근대사회 체제형성의 계기로서보다는 중세사회체제의 붕괴, 해체를 촉진시키는 운동이 되었던 것이다.

(3) 정부 및 지배층의 대응

훈련도감은 서울 도성의 수비의 핵심 군영이었다. 그러나 훈련도감의 중요 구성원인 하급 군병에 대한 대우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점차 나빠지 고 있었다. 더구나 군제개편으로 인한 하급 군병들의 지위 하락, 급료의 13개월 미지급, 신식 군대에 밀려 곧 도태되리라는 위기감으로 하급 군병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그리고 개항 이후 악화되어 가던 경제사정은 도시 하층민의 생계를 위협했고, 일본공사관 설치와 별기군 창설은 일본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개된 유생들의 상소운동은 서울 하층민들의 폭넒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은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유생들의 상소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했으며 별기군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도봉소사건에 관련된 군병 4명을 체포, 구금한 강압적조치는 하급 군병들의 잠재적인 불만과 저항의식을 폭발시켰고, 군병들이 집단등소를 전개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이들의 요구를 일정한 부분이나마 수용하려는 자세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게다가 사태가 확대된 다음 급료지급책임자를 파직시키고 군 지휘책임자를 교체함으로써 이들을 희생양을 삼으려했던 조치는 오히려 적대감을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민씨 척족정권은 계속 무력에 의한 진압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서울의 수비를 담당한 주력부대인 훈련도감의 하급 군병들이 저항의 중심세력이 된상황 속에서 이들을 통제할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운동이 계속 확산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도층의 통제력은 마비상태로 빠져 들어갔으며, 결국 하층민의 저항을 통제하지 못한 민씨 척족정권은 무너지고 정치권력이 대원군세력으로 넘어갔다.

새로 들어선 대원군정권에 의한 개혁안 제시와 민비의 국상 결정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효과적인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하층민들에게 보상심리로 작용한 듯하다. 물론 대원군정권의 개혁안이 도시 하층민의 요구를 전적으로 만족시켜 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전의 민씨 척족정권의 정책에 비하면 하층민의 눈에는 과단성 있는 개혁이었고 자신들의 요구가 상당한 정도로 반영된 것이었다. 이 조치로 확대되던 저항운동은 일단 가라앉았다. 그러나 하층민 중에서 군병조직은 쟁취한 결과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계속 유지 되었다. 하층민 군병조직을 기반으로 서 있던 대원군정권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통제가 불가능했으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협조하였다. 도시 하층민의 운동은 외세에 의해 진압되었다. 일본군과 청군이 제각기자국의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자 민씨 척족세력과 개화파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청군의 힘에 의지하여 대원군세력을 밀어내고 하층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결국「임오군란」은 실패하고 말았다. 운동구조의 내적인 한계—즉 이념과 조직상의 한계—와 함께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좌절된 운동이었다.

외세에 의지하여 정권을 회복한 민씨 척족세력과 개화파는 도시 하층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력으로 억누르며 정권을 회복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이러한 방식의 정권회복은 외세의 침투를 더욱 크게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점차 청국과 일본 양대세력이 깊이 침투해 들어오는 길이 터놓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趙誠倫〉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1) 조선정부의 대청통상정책

1876년(고종 13) 문호개방 직후에도 조선정부는 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전통적인 '事大'와 '交隣'이라는 관념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사대'와 '교린' 관계는 조선이 서구 근대문물 수용과 함께 만국공법적인 체계를 수용하고자 할때에는 극복되어야 하는 인식체계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개항 직후 한참동안 일본과의 통상을 이전의 교린관계의 회복이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청과의 관계도 여전히 사대관념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대외인식은 조선이 일정하게 서구 근대문물을 수용하면서 국제관계에서의 만국공법적인 세계체제에로 편입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달라지게 되었다. 1880년 《朝鮮策略》의 전래는 이 같은 조선사회의 전근대적 세계질서에 대한인식을 바꾸게 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책략》은 개항 이후 몇 해가 지나도록 조선정부 내부에서조차 수교통상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대신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매개가 되었다.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되었다가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온 金 弘集이 주일청국공사 何如璋에게 보낸 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쳤다고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졌다"」)고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선책략》의 전래는 조선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방향과 추진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아시아 질서체제 즉 조공체제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관계를 만국공법적인체제로 간주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에 그 동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있다.

조선정부는 《조선책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대청관계에서 일정하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對淸通商要請을 비롯하여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해 청에 자문을 구하는 '請示節略'을 작성했다. '청시절략'은 당시조선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화정책에 대한 구상안이었다. 따라서 청시절략이 마련된 1880년은 조선이 비로소 대외관계에서 통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내적으로 개화자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점이 되는 해였다.2)

조선정부에서 '청시절략'을 작성한 것은 《조선책략》의 내용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통상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조선정부 가 당면 정세에 대응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부국강병책의 모색이 있었음으로 써 가능했다. 비록 조선정부관료 모두가 대외통상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30 고종을 필두로 한 개화추진세력들은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을 만국공법적인 관계로 전환하면서 대외통상에 의한 부국강병책을 이로부터 가시화시키고 있었다.

^{1)《}清季中日韓關係史料》2, #353-(1), 光緒 7년 2월 3일(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463b等.

[#]는 자료에 나타난 문건번호, a는 쪽의 윗단, b는 쪽의 아랫단.

²⁾ 具仙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혜안. 1999). 28쪽.

^{3) 《}조선책략》에 대해 두세 사람의 廷臣이 협찬했으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淸季中日韓關係史料》2, #353-(1), 光緒 7년 2월 3일, 462b 쪽 참조. 이로 보아 오히려 반대하는 조선정부 관료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수신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홍집이 복명할 때 고종과 나눈 대화를 보면, 고종은 일본과의 현안문제인 관세협정문제를 비롯해서 외국어교육과 군사훈련, 무기, 통상 등 부국강병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정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청이 연대하여 러시아에 대처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었지만 고종은 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고종에게는 청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의 힘을 키워 부국강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 만큼 무비에 대한 관심이 컸다. 김홍집의 경우 당시 현안 문제 중의 하나였던 통상에 더 역점을 두고 대외문제를 풀어 보려고 했다. 5) 결국 고종을 비롯한 개화추진세력이 추구한 정책은 내적으로는 무비자강책이며, 외적으로는 대외통상정책이었던 것이다.

조선정부가 《조선책략》의 전래를 계기로 하여 청에 자문한 '청시절략'의 내용은 만국공법체제 내에서 무비자강책과 대외통상정책이라는 기존의 현안 문제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時務'에 관계된 것이었다. 특히 통상문제는 일본과의 문호개방 이후 조선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당면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청과의 통상제의, 각국수호입약통상장정 세칙액조관과 세관설관범례에 대한 청구, 대일관세협의문제 등의 내용이 있었다.

조선정부는 강화도조약 당시에는 관세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일본과 무관세무역을 하고 있었다. 대일무관세무역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李鴻章은 1879년 7월 領府事 李裕元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외통상을 권유하면서 "만약 관세를 정하면 나라의 경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상업에 익숙하면 무기구입도 어렵지 않게 될 것"6이라고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 만

^{4)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8월 28일,

[《]修信使記錄》全,修信使日記 권2,入侍筵說.

한편 고종은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대청인식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데, 즉 기존의 主—臣관계이던 대청관계를 동등관계로 바꾸어 보려는 의식적 변모가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외순,〈大院君執政期 高宗의 對外認識—遣淸 回還使 召見을 중심으로—〉(《東洋古典研究》 3. 1994) 참조.

^{5) 《}高宗實錄》. 고종 17년 8월 28일.

^{6) 《}高宗實錄》, 고종 16년 7월 9일.

宋近洙,《龍湖閒錄》23, 기묘 7월 9일.

[《]清季中日韓關係史料》2, #309, 光緒 5년 7월 13일, 368b쪽.

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조선정부에게 국고에 보탬이 된다는 관세에 관한 이홍장의 의견은 조선정부가 이후 관세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 뒤 軍械學造事를 자청하러 청에 파견된 齎咨官 卞元圭를 통하여 다시이홍장은 관세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려주었다. 당시 조선정부가 일본과의 무관세무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안 이홍장은 자신이 의도하는 대외통상에로 조선을 유도하고자 하여 출입구세의 의정 등 자세하게 관세문제를 변원규에게 설명했다.7) 이런 과정을 통해 통상국간의 관세 성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한 조선정부는 1880년 5월 제2차 수신사의 파견에서 일본과의 무관세무역을 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권사신이 아니라는 이유로관세협의를 하지 못하고 수신사 김홍집은 돌아왔다. 김홍집은 일본에 있는 동안 일본주재 청국공사 하여장과의 필담을 통해서 관세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었고, 일본의 관세 운용도 견문할 수 있었다.8)

1880년 8월 28일 수신사 김홍집은 일본에서 견문한 것들을 복명하면서 관세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고수입 가운데 地租와 關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재정관세에 역점을 두어 보고를 했다.9) 또한 당시 조선정부는 일본과 인천개항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었으므로 김홍집은 일본의 使臣駐京 문제에 대해서도 관찰했다. 김홍집은 이에 대해 "일본은 공사를 각국에 파견하여 상주시키고 있는데 朝官은 公事가 아니라도 往遊하여 그 동정을 살피므로 천하형세를 이웃의 일처럼 이야기한다"10)고 고종에게 진언했다. 김홍집의 일본의 사신파견에 대한 상황보고는 일본과의 사신주경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다. 이것은 후술하듯이 조선정부가 청에 派使駐京을 제의하게 되는 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정부는 1881년 1월 청에 보낸 '청시절략'에서 청과 통상할 것을 제의했다.¹¹⁾ 조선정부는 일본과의 무관세무역으로 대일무역이 확대일로에 이르자

^{7)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 #341-(2), 光緒 6년 9월 28일, 432쪽.

^{8) 《}修信使記錄》 全. 修信使日記 翌2. 大清欽使筆談. 178쪽.

^{9)《}修信使記錄》全,修信使日記 권2,復命書,154쪽.

^{10) 《}修信使記錄》全, 修信使日記 권2, 復命書, 151쪽.

^{1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 #353-(6), 光緒 7년 2월 3일, 475쪽.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일본 이외의 국가와도 교역을 하고자 했다. 그 결과 청과의 만국공법적인 무역개시라는 정책적인 조정으로서 청에 통상제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측 또한 조선에서의 일본세력의 독주를 막고 러시아 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조선측에 통상을 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은 조선 에 대한 교역확대의 내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가 대청통상을 요 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청나라 상인이 조선에 가서 무역하기를 바란다 면 조선국왕이 청한 후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2) 청은 조선과의 관계에서 조선이 먼저 자청하는 식으로 해서 현안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 것은 전통적인 사대관계를 확인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청에 통상을 자청하라는 요구를 듣고 난 후 조선정부는 통상문제에 대해다가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일본의 물정을 詳探하기위해 1881년 1월 파견된 '조사시찰단' 중의 한 사람이었던 어윤중은 같은 시찰단원인 홍영식과 함께 일본주재 청국공사인 하여장과 만나 외국과의 수교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했다.13) 어윤중은 일본을 거쳐 바로 청으로 갔다. 그는 영선사 김윤식과 工學徒를 만나보고 청의 개화정책을 견문했으며, 津海關道 周馥・直隷總督 李鴻章 등과 회담하면서 이미 1881년 1월 '청시절략'을통해 자청한 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의논했다.14) 그는 돌아오는 길에 주일청공사로 임명된 黎庶昌과 상해에서 만났을 때 여서창이 부강을 하려면 參用西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어윤중도 만국과 통상한 이후에 부강을 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헛된 말일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당시인이 무비로써 외국을 제압할 수 있음은 알아도 商務로써 외국을 제압할 수 있음은 탈아도 현장로 알수 있다.

^{12) 《}淸季中日韓關係史料》2, #353-(6), 光緒 7년 2월 3일, 475쪽. 金允植, 《陰晴史》, 고종 19년 1월 18일.

^{13)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 #365, 光緒 7년 7월 3일, 509쪽 및 #370, 光緒 7년 9월 6일, 518a쪽.

¹⁴⁾ 魚允中,《從政年表》, 고종 18년 10월 2・6・10일.金允植,《陰晴史》, 고종 18년 11월 28・30일, 12월 26일.《清季中日韓關係史料》2, #377, 光緒 7년 11월 9일, 525b쪽.

^{15)《}清季中日韓關係史料》2, #387-(1), 光緒 7년 12월 8일, 544b~545a쪽.

어윤중의 귀국복명은 1881년 12월 14일에 있었다. 그가 보고한 내용을 종합하면, ① 지금의 국제정세를 돌아볼 때 부강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보존할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상하가 한 뜻으로 경영하는 것은 부강이며, ② 청은처음 軍務에만 힘을 썼으나 근래에는 招商局을 설치하고 輪船을 이용하는 등 상업을 권장하며 외국과 통상하므로 우리 또한 商務로써 이에 응할 수있다. ③ 일본은 서양과 통상을 시작한 이후 우리를 隣國으로 보고 있으며,우리가 부강한 길로 나아가면 일본이 감히 '他意'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 등이었다.16) 이렇게 축적된 통상문제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어윤중은 1882년 2월 問議官에 임명되어 청과 통상문제를 담판하게 되었다.

어윤중이 문의관으로서 청으로 가기 전 고종은 어윤중에게 청과의 새로운 통상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조선과 청이 통상해야 하는 이유로 사신문제와 북도의 공동무역 문제를 들었다.17) 이것은 對日‧對歐美 통상에 대한 견제책으로서의 청과의 통상요구라는 목적과 함께 조선측의 경비부담이었던 조공사절·칙사의 왕래 및 변경개시에 대해서도 통상문제를 협의할 때 개선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18) 특히 사신문제는 경비부담에 의한 개선 제의에서 나아가 청과의 관계를 이전의 조공체제에서 근대 국제공법체제하의 독립국 대 독립국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더구나 고종은 일본과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 청에도 항구를 개방해야 한다고 어윤중에게 말해 조선과 청을 대등하게 보고자 하는 인식을 드러냈다.19)

그러나 고종의 이러한 청에 대한 인식은 조선정부관료들에게서 보편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의정부 전임대신들(領府事 洪淳穆, 判府事 韓啓源, 領敦寧 李最應, 判府事 金炳國과 前領議政 徐堂輔)은 연명으로 箚子를 올려 고종의 어윤 중에게 내린 지시가 청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20) 당시 고종과 의정부대신과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만국공법적 세계체제를 인식하면서 청과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한 고종과

¹⁶⁾ 魚允中.《從政年表》. 고종 18년 12월 14일.

^{17) 《}承政院日記》・《從政年表》、 고종 19년 2월 17일.

¹⁸⁾ 秋月望,〈朝中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經緯〉(《朝鮮學報》115, 1991), 105쪽.

¹⁹⁾ 具仙姫, 앞의 책, 61쪽.

^{20) 《}承政院日記》・《從政年表》, 고종 19년 3월 8・9일.

전통적 관계를 고집하는 정치세력과의 갈등이었다.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조・청관계의 변질

(1) 조・청통상협의

문의관 어윤중이 가지고 간 고종의 자문과 이 자문 내용을 따로 몇 개 조 목으로 나누어 초록한 것은 이후 청과의 통상협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이 통상 駐使 등의 일로 질의한다…舊章에 구애받지 않고 우매함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진언한다. 현재 외국인이 홀로 商利를 천단하고 선박이 바다를 달리는데 오직 上國과 우리 나라는 서로 해금을 지키니 視同內服之義와다르다. 빨리 상국 및 우리 나라 인민으로 하여금 이미 개항된 口岸에서 서로 質遷을 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또한 派使를 허락하고 入駐京師하여 두터운 정의를 통함으로써 聲勢에 도움이 되면 外侮를 막을 수 있고 민지를 굳게 할 수있다…

- 1. 이미 通商駐使가 행해지고 있은즉 장정을 타결하고자 하나 오직 상국의 裁定을 앙망할 뿐이다.
- 조선의 함경도에 烏口刺・甯古塔 民人이 와서 교역하는 일은 일찍이 말한 바 있는데 지금 아라사가 국경을 연해 있으면서 육로통상을 방해하려 하 여 걱정이 되니 이 開市를 폐지하여 점증하는 아라사의 대두를 막자. 또 한 商民을 供饋하는 법규를 혁파하여 통상장정을 새로 정할 때에 따로 1 款으로 의정할 것을 奏明한다.
- 1. 이미 駐使가 행해지고 있은즉 賀謝·陳奏 등의 사절은 따로 파견할 필요 가 없다. 칙명을 내려 또한 따르도록 함이 옳다.
- 1. 使臣은 自備資粮하는데 종전에는 上國이 頒賜하거나 연로에서 留館할 때 에 廩給했지만 또한 영원히 혁파함이 가하다.

(《從政年表》, 고종 19년 4월 1일;《清季中日韓關係史料》2, #417-(5), 光緒 8년 4월 22일, 597쪽;《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北京古宮博物院 編, 1963), 권 3, #(103), 光緒 18년 4월 29일, 16~17쪽).

위 咨文에서 조선정부가 요구한 ① 開海禁과 통상장정체결, ② 北道開市革 罷 및 그에 따른 供饋의 폐지, ③ 派使駐京, ④ 年貢·賀謝·陳奏 등 事大使 行의 폐지 등은 결국 청과의 통상과 사대사행의 폐지로 집약할 수 있다. 어윤중은 1882년 4월 3일 가진 주복과의 회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자청한이유를 설명했다.

宇內가 무사하다면 조선이 비록 불편함이 있다고 하나 어찌 감히 가벼이 경장을 의논하겠는가. 조선의 일로 대강을 개진하자면 조선은 지금 러시아와 일본에 끼여 있는 가까운 땅이며, 외국이 또한 번갈아 通好하러 오니 내수자강을 기약해야 만국과 대립할 수 있고, 上國에 근심을 끼치지 않게 된다. 조선 8도는 중국의 일개 작은 성에 불과하다. 1년 세입이 겨우 은 30만 냥이며 함경도 세입의 반이 烏剌・會寧 互市에 충당되고, 평안・황해도의 세입은 使行의 왕래에 충당되어 度支에서 받을 수 없으니 어찌 上國의 번병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更張의 일로 자청하는 것은 아니니, 오직 上國의 裁定만 기다릴 뿐이다. 금일의 계책으로 단지 舊典만을 지킴은 자강하여 上國의 拱衛함만 못하다(《淸季中日韓關係史料》2, #417-(1), 光緒8년 4월 22일, 591b~592a쪽).

즉 조선의 내수자강은 청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방법이 되고, 또 조선의 경제적 궁핍은 청의 번병으로서 역할하는 데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에 통상요청과 사대사행폐기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는 청과의 관계를 이용해조선의 당면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조선정부의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아직이 단계에서는 이를 독자적 힘으로 추진해 갈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강하지 못했으므로 청의 '裁定'만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했다.

조선정부의 위와 같은 요구는 북도개시 때의 供饋폐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부되고 말았다. 청에서는 조선정부의 통상제의에 대해 자국을 경시하는 대 담한 요구로 보고 있었고, 事大之典과 관계가 있는 파사주경의 제의는 조선과 청과의 조공관계를 위반하는 징조로 보는 견해가 팽배했다.²¹⁾ 이미 1882년 4월 3일 어윤중이 청의 진해관도 주복과 필담할 때에 주복은 파사주경의 문제에 대해 통상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서서히 상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구례를 갑자기 고친다면 청에서 시비가 일어날 것이므로 사대지전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조선이 '輕議更張'할 것이 못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²²⁾ 그러나 어윤중은 4월 18일 주복과의 연이은 필담에서 이 문제는 조선

^{21)《}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권3, #(104) · (105), 光緒 8년 4월 29일, 17~18쪽.

정부의 경장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전통적 사대관계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²³⁾

그러나 아무리 조선 내부의 경장정치를 위한 것일지라도 일단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한 조선정부의 통상정책이 만국공법적인 관계에서 추진될 수는 없었다. 조선정부가 청을 조선과 대등한 국가로 간주하고 제시한 대청통상요청은 오히려 전통적인 '속방'관계에 가탁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자 하는 청의 의도로 거절되었다. 그 결과 조·청통상문제는 임오군변이후 8월 23일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한 전문 8조의〈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로 귀결되었다.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조ㆍ청관계의 변질

임오군변 이후 고종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향후 조선의 정치개혁방안 즉 '善後事宜六條'를 만들어 1882년 7월 16일 청국 파견 사신으로 임명된 陳奏正使 趙寧夏, 副使 金弘集, 從事官 李祖淵 등을 통해 이홍장에게 보내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24) 安民志·用人才·整軍制·利財用・變律例・擴商務의 여섯 가지 조목으로 되어 있는 '선후사의육조'는 조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화정책의 방향을 예시한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의 방향을 정립했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과 시설, 인재등이 부족함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임오군변이 진압된 직후 바로 陳奏使行편에 이 개혁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청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1882년 8월 6일 진주사 조영하는 이홍장과 '선후사의육조'에 대해 문답하는 중에 군변 이전에 조선과 수륙통상조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 상론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자 이홍장은 馬建忠과 상의해서 시행하라고 대답했다.²⁵⁾ 마건충은 조미조약 조인 때와 그 후 조영·조독조약 조인 때에 입회했고, 임오군변 때에도 조선에 파견되는 등 청의 洋務派관료 가운데 제1

^{2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 #417-(1). 光緒 8년 4월 22일. 591a쪽.

^{23)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 #417-(6), 光緒 8년 4월 22일, 601b쪽.

^{24)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554, 光緒 8년 8월 8일, 910~917a쪽.

^{25)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554-(2), 光緒 8년 8월 8일, 914b쪽.

급의 조선통으로서 이홍장뿐이 아니라 조선측에서도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었다.²⁶⁾

조선정부는 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1882년 8월 12일 문의관 어윤중을 다시 천진에 파견했다. 8월 17일 천진에 도착한 어윤중은 다음날 진주사로 간조영하 일행과 합류하여 마건충·주복·이홍장 등을 차례로 만나고, 8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통상장정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27) 조선과의 장정체결을 주도했던 이홍장의 기본방침은 속방과의 교역은 다른 대등한 나라와같을 수 없다는 만국공법을 참작하여—장정체결을 통해 조선과 청 양국이서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속국과 교섭하는 체통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藩服을 지키면서 이권을 확장하는 것이었다.28) 한편 어윤중은 청측에서 제시한 장정 초안을 청측 대표인 마건충과 주복과 논의하는 가운데 장정이 공법을 참작하여 규정되었지만 조선과 청 사이의 사대관계에 입각한 규정내용이 구미제국에 원용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어윤중이 수정 요구한 항목은 개항장에서의 재판관할권 문제와 양국연안에서의 어채문제, 漢城開棧 및 內地採辦문제, 紅蔘稅率문제 등이었다.29)

어윤중에 의해 수정 요구된 4개 항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파견하기로 한 상무위원의 재판관할권문제이다. 청의 상무위원은 조선에서 영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조선인이고 청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에도 조선관리와 같이 심리에 참가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청국내에서는 조선상무위원의 영사재판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財産罪犯은 조선 상민이 원고이건 피고이건 가리지 않고 청국 지방관의 관할하에서 심리되고, 조선상무위원은 심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어윤중은 상무위원과 지방관에게 대등한 심판권을 주어 공평하게처리하도록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둘째, 장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양국 상선의 해로통상과 난파선박의 구

²⁶⁾ 秋月望、〈朝中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經緯〉(《朝鮮學報》115, 1991), 106쪽,

²⁷⁾ 魚允中.《從政年表》. 고종 19년 8월 17~22일.

^{28)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594, 光緒 8년 8월 30일, 979a쪽 및 #596, 光緒 8년 9월 1일, 987a쪽.

²⁹⁾ 金鍾圓、〈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歷史學報》32, 1966), 152쪽.

원의무, 쌍방의 연해해역에서 어선조업의 공인 조항이다. 여기서 어윤중은 양국 어선의 조업조항을 조문 속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일본이 이 조항을 전례로 일본어선의 조선연안에서의 조업인가를 요구할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청국어선이 조선연안에 진출함으로써 밀무역이 증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한성개잔 및 양국 상인의 상대국에서의 상업활동 즉 내지채판에 관한 것이다. 어윤중은 조선의 경제가 취약함을 이유로 한성개잔 및 내지채판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제6조에 들어 있는 홍삼세율문제로 홍삼은 조선이 청에 수출하는 최대품목이었다. 청의 초안에서는 그 세율이 30%로 규정되었다. 어윤중은 조선에서 이미 홍삼의 반출량을 규제하고 수출세를 정집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데 여기에 고율의 수입세가 부가되면 유통이 막힐 뿐 아니라 밀매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율인하를 요구했다.

어윤중이 다른 나라의 원용을 두려워해 제시한 4개 수정 항목 중 홍삼세율문제만은 청측이 약간 양보하고 나머지 세 항목은 청측에 의해 거절되었다. 청측은 공법 내에 藩屬朝貢之國에 관계되는 무역왕래의 한계를 정한 것은 조선과 청 사이에 통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와 정한 조약은 양국이 비준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조약이지만 조선과 청 사이의 장정은 청 조정이 특별히 윤준해서 쌍방이 서로 맺은 約章이고 상하가 정한 조규로서 명칭이 '條約'과 '章程'으로 다르듯이 실제의 내용도 같지 않아, 조선이 청과 맺은 장정과 그 밖의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반박했다.30) 이것은 청이 조·청 사이에 체결된 장정을 근대 국제법적인 세계질서에 기초한 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어서 청측은 장정이 서로 평등한 예를 하는다른 나라와의 조약과 달라 다른 나라가 원용할 것을 염려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이 청과의 체제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단지 일본을 두려워하고 청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30)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594-(3), 光緒 8년 8월 30일, 984쪽.

다른 나라가 장정을 원용할 것이 염려가 된다면 장정에 속방조관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31)

청측이 속방조관 삽입을 조선측에 종용한 것은 속방조항을 명문화하여 다른 나라에게 주지시키고자 한 이홍장의 계책이었다. 임오군변이 발발하자 일본주재 청국공사 여서창이 군변이 평정된 후 조선의 국사를 청이 통할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청의 대조선정책에서 강경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다.32) 하지만 이홍장은 외교적인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청의 국내사정을 고려한 끝에 시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었다.33) 이홍장은 장정체결 당시 이런 대조선 강경론을 지양하면서 속방조항을 넣어 간접적으로 조선이 청의 만국공법적인 속국이라는 것을 언명하고 이를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 것이었다.34) 속방조항에 대해서 어윤중이 반대하지 않은 것은 조미조약체결 당시 청이 조선에 강요한 속방조항을 김윤식이 그대로 수긍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35)

장정체결 때 어윤중의 속방조항에 대한 인식은 김윤식의 인식과 같았다. 그들은 대외전략에서 기왕의 조선과 청과의 사대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는 선 에서 청이 조선을 방위해 줄 수 있는 국가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3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594-(3), 光緒 8년 8월 30일, 986a쪽. 청측이 제시한 장정 초안에는 속방조항이 없었다.

^{3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 #486, 光緒 8년 6월 26일, 773쪽.

^{33)《}清季中日韓關係史料》3, #624, 光緒 8년 10월 13일, 1032b~1033a쪽.

³⁴⁾ 具仙姬, 앞의 책, 86쪽.

³⁵⁾ 金允植,《陰晴史》,고종 18년 12월 27일. 김윤식은 조미조약체결 당시 청에 있으면서 이홍장이 조미조약에 속방조관을 넣어야 한다는 제의에 찬동하고 나서 고종에게 올리는 封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가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이다. 항상 중국이 착실하게 담당할 뜻이 없으면 孤弱之勢가 될 것 같고,大邦의 보호함이 없으면 실로 特立하지 못할 것같아 걱정했다. 지금 李中堂(이홍장-필자)은 중국의 병권을 쥔 대신이다. 다행히 我國을 담당하는 중임을 의연히 스스로 맡아 이미 각국에 성명하고 약조에 大書했다. 다른 날에 우리 나라에 일이 있는데 힘을 다해 구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비웃을 것이나 다른 나라가 중국이 우리 나라를 담임한 것을 보면 각국이 우리를 경시하는 마음도 또한 따라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그 아래에 자주한다는[구절-필자]까지 넣게 되면 각국과 서로 교통하는 데 무해하고 평등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실권할 염려도 없고 사대하는 데에도 어긋나지 않으니 양득이 된다고 할 만하다."

러나 이들은 청이 조공관계에 가탁하여 조·청관계를 근대적 종속관계로 개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단지 전래적인 조공관계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전래적인 조공관계에서는 공물을 바치고 의례적인 행사 몇가지만 하면 청이 조선을 병합하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당시대다수의 조선인만이 가졌던 대청인식의 한계였다.

장정은 조선정부가 기왕의 조공관계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적인 평등관계를 지향하면서 맺고자 한 것과는 달리, 청은 만국공법에 준하는 속국을 조선에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장정은 조선에 대해서는 불평등조약이 되었고, 청은 이 장정을 통해 조선에 근대적 식민지배를 자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기점으로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의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종속관계로 조선과 청과의 관계는 변질되었다.

조선과 청측의 협상 결과 체결된〈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前文:조선이 속방임과 淸商의 특혜규정.

"이 상민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국과 더불어 일체 균점하는 예에 있지 않다."

제1조: 商務委員의 파견 및 兩國派員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2조: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 인정.

제3조: 遭難救護 및 평안·황해도와 山東·奉天 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 관세규정.

제4조: 북경과 漢城·楊花津에서의 開棧貿易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판 및 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執照를 받을 것. 관세규정.

제5조: 세칙규정. 柵門・義州, 琿春・會寧에서의 개시.

제6조: 홍삼무역과 세칙규정

제7조:招商局輪船 운항 및 청 병선의 조선연해 왕래·정박. 제8조: 장정의 수정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咨文으로 결정.

그리고 이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육로통상, 즉 변경개시의 개 편에 대해서는 현지답사한 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 1883년에〈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과〈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이 체결 됨으로써 육로통상의 상세한 문제들이 규정되었다.³⁶⁾

〈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은 전문에 청과 조선이 종주국과 속방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정부의 비준조차 요구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 내용도 특권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2조의 치외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장을 청국에 고스란히 내어 주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다. 제4조의 서울을 개시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호조가 있으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행상이 가능하다는 내지통상권에 대한 규정, 제7조의 연안무역권의 승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전문에는 종주국과 속국간의 관계에서 맺어진 것이므로 이 장정을 다른 나라와 균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뒤에 체결되는 조약, 특히 일본과 영국간의 조약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조문이 계기가 되어 조선시장은 서울에서 벽촌에 이르기까지 외국상인에게 시장이 개방되고 말았던 것이다.37)

따라서〈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은 정치적으로는 청과 조선과의 관계가 전통적 조공체제에서 변질된, 곧 청이 조선에서 의도한 근대적 식민지배의 속셈을 명문화한 결과를 가져왔고,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조약체계의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시장의 보호와 나아가 국내산업의 육성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자주적 근대화를 저애하는 계기가 되었다.

〈具仙姫〉

³⁶⁾ 秋月望, 앞의 글, 104쪽.

³⁷⁾ 李炳天,《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제1장 참조.